



법원행정처



우리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된 이래 반세기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법체계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석조건을 다양화하고 수사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아울러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우리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그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정신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설명자료 등을 참조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입법경과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 책자에 기재된 법률내용에 관한 설명은 대법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실무 운영에 있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임성근 형사정책심의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6.



# 차 례

I.	.	1
1.	구속의 사유(제70조)	1
2.	구인 후의 유치(제71조의2)	3
3.	구속과 이유의 고지(제72조)	5
4.	구속영장 집행절차 개선(제81조)	6
5.	구속기간과 갱신(제92조)	7
6.	보석제도의 개선	10
가.	보석 청구권자(제94조)	10
나.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제97조)	11
다.	보석의 조건 다양화(제98조)	12
라.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제99조)	18
마.	보석집행의 절차(제100조)	19
바.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0조의2)	20
사.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제102조)	21
아.	보증금 등의 몰취(제103조)	23
자.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	25
차.	보석조건의 효력 상실(제104조의2)	25
7.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26
가.	긴급체포의 사유(제200조의3)	26
나.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4)	28
다.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5)	31
8.	영장심사제도의 개선(제201조의2)	32

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제201조의2 제1항, 제2항) .....	35
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제201조의2 제4항) .....	36
다. 영장심문조서의 작성(제201조의2 제6항, 제10항) .....	37
라. 준용규정의 정비(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	37
9.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2) .....	38
10. 긴급압수·수색제도의 개선(제217조) .....	43
II. ....	46
1.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천명(제198조 제1항) .....	46
2.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제243조의2) .....	47
3. 진술의 영상녹화 .....	49
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2) .....	49
나.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	51
4.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44조의3) .....	53
5.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	54
III. ....	56
1. 재정신청(제260조) .....	56
가. 대상범죄 .....	57
나. 검찰항고전치주의 .....	58
다. 재정신청의 방식 .....	58
라. 관할법원 .....	59
마.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59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	60
가. 고등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1조) .....	62
나. 심리와 결정(제262조) .....	63

3.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제262조의2)	65
4. 재정신청의 비용부담(제262조의3)	66
5. 공소시효의 정지(제262조의4)	68
6.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69
7. 공소취소의 제한(제264조의2)	71
IV.	72
1. 의견서 제출제도(제266조의2)	72
2. 증거개시제도	73
가. 개요(제266조의3)	78
나. 증거개시의 대상(제266조의3, 제266조의11)	79
다. 증거개시의 제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81
라.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4)	82
마.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제266조의16)	83
3. 공판준비절차	83
가. 공판준비절차의 개요(제266조의5)	83
나.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6)	85
다. 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7, 제266조의8)	86
라.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6조의9)	88
마.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0)	91
바.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제266조의12)	92
사.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3)	92
아. 준용규정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4, 제266조의15)	94
V.	95
1. 증인의 출석 확보	95

가. 증인의 소환(제150조의2) .....	95
나. 불출석증인에 대한 제재(제151조) .....	96
2. 증거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제184조 제4항) .....	98
3.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	99
4. 집중심리(제267조의2) .....	101
5. 공판정의 좌석(제275조) .....	103
6. 구두변론주의(제275조의3) .....	105
7.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 .....	105
8.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3조의2) .....	107
9. 모두절차 .....	109
가.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	109
나.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 .....	110
다.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제287조) .....	111
10. 증거조사절차 .....	112
가. 증거조사의 순서(제290조, 제291조의2) .....	112
나.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 .....	114
다. 증거물, 기타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 제292조의3) .....	116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 .....	117
11. 피고인신문(제296조의2) .....	118
12. 판결선고기일(제318조의4) .....	119
VI. ....	122
1. 증거재판주의(제307조) .....	122
2.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제308조의2) .....	122
3. 조서의 증거능력 .....	125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제2항) .....	127



나. 기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	133
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4항) …	134
라.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5항) …	138
마.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6항) …	138
바. 증거능력의 예외(제314조) …	138
4. 전문의 진술(조사자 증언제도, 제316조) …	141
5. 탄핵증거(제318조의2) …	142
VII. …	146
1.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	146
2.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	149
3. 피해자 통지제도(제259조의2) …	151
4.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제294조의2, 제294조의3) …	152
가. 피해자의 진술권(제294조의2) …	152
나.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3) …	155
5.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 …	156
VIII. …	160
1.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제59조의2) …	160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164
가.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194조의2) …	164
나. 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조의3) …	165
다. 비용보상의 범위와 준용규정(제194조의4, 제194조의5) …	166
3. 공소효력의 범위(제247조, 제248조) …	169
4. 상소제도 …	170
가. 상소권 회복 청구와 집행정지(제348조) …	170



I.

1. ( 70 )

현행법	개정법
第70條(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구속 사유는 “① 주거부정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이다. 그런데 범죄의 경중, 즉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2006. 2. 27. 장운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속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운석 의원안’이라 한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에 계류되기에 이르렀다. 장운석 의원안에 따르면, 구속 사유로 (1)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는 등 피고인이 다시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때, (2)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

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신설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피의자의 구속을 증거인멸 및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강제처분으로 평가해 왔고,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태도이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구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무에 의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하고 있음에도, 이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불구속재판·수사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sup>1)</sup>는 오히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은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이 허용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비추어 구속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이 없으면 구속하지 못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다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살인, 상해치사, 집단학살, 시각·청각·언어능력 등에 대한 중상해, 방화에 의한 중상해, 방화치사, 폭발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16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행위, 피구금자·병원 입원자·요양 중인 사람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와 무기 등을 사용한 州의 평화교란행위, 독극물 등을 사용한 중상해, 주거침입절도, 무기소지절도, 강도 등, 영업적인 장물취득, 사기, 건조물방화 등, 차량운전자에 대한 공갈행위 등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반복하거나 계속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 구속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12조a, 제113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제70조와 거의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① 재판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류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아니한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하부 인자에 불과한 ‘사안의 중대성’이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추가되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사위에서 구속사유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윤석 의원안을 반영하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고 구속사유 판단시의 일반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구속사유 자체는 현행법처럼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었다. 실무상으로는 이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해 왔으므로,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한 근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개정법의 시행과정에서 구속실무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2. ( 71 2)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

는 때)

	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구인장이 집행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야에 법원에 인치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하였는데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계속하여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 법원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치할 만한 시설과 이들을 감시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 실무는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하여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현행법상 피의자를 법원 이외의 장소에 유치할 근거는 명문의 근거가 없으나,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1 제2항에는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2)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5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 ①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신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 ② 피의자의 유치는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 이름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법원 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서명을 받고 구인영장의 원본을 호송경찰관 등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영장시스템에서 출력한 영수증에 경찰관의 서명을 받는다.
- ④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석방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있었고, 이는 유치권한을 부여하고 그 방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개정법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75조<sup>3)</sup>와 마찬가지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3. ( 72 )

현 행 법	개 정 법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단서 신설>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 ----- ----- -----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및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주소지에서 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집행 불능이 될 것이 거의 명백하고, 도망한 피고인은 법적 청문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제72조 본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61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sup>4)</sup>

3) 일본 형사소송법 제75조(구인된 피고인의 유치) 구인장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인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감옥에 유치할 수 있다.  
 4) 일본 형사소송법 제61조(구류와 피고사건의 고지) 피고인의 구류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을 고지하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1 )

현행법	개정법
第81條(拘束令狀의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 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 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 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前項 但行의 境遇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 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書記官 또는 書記는그 執行에 關하 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矯尊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 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 하여 矯尊官吏가 執行한다.	第81條(拘束令狀의執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법원 사무관등은-----사법 경찰관라교도관 또는 법원경위 ----- ③ ----- ----- -----교도관이 -----

현행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이나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은 이를 명문화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뿐만 아니라 교도관,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1조 제2항).



5. ( 92 )

현 행 법	개 정 법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拘束 期間은 2月로 한다. 特히 繼續할 必要가있는 境遇에는 審級마다 2 次에 限하여 決定으로 更新할 수 있다. ② 更新한 期間도 2月로 한다.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 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 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 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 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期間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 한다.	③ ----- ----- -----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 구금 기간은----- ----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1심은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은 4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 증거조사를 원해도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듯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구속기간 제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

애를 주게 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상소기간,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이 지나치게 짧은 구속기간으로 인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고사건의 경우 대법관 전원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나 대법원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 법리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현행법의 구속기간 제한은 유례가 없다. 즉, 일본의 경우 공판단계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1개월마다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독일의 경우 수사상 미결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6개월 이상의 구속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기록을 보내 구속의 계속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독일 형사소송법 제121조), 일단 공판이 시작되면 판결 선고시까지 위 6개월의 구속기간은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공판이 시작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제한이 없다. 또한 자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이 선고된 경우에는 미결구속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268조b, 제332조).

##### 5)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구류의 이유, 기간·기간갱신) ② 구류기간은 공소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1개월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89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은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344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의 구류기간 등)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60조 제2항 단서, 제8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죄의 예심구속기간은 4개월(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145-1조)로서,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지만, 이미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여 1년을 초과하는 구금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은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가능하고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총 구속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행한 범죄, 마약거래, 테러, 조직매춘, 매춘, 탈세 또는 범죄단체조직을 통한 범죄이거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중죄의 예심구속기간은 1년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연장되는 총기간은 법정형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기타의 경우에는 3년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행한 범죄는 법정형의 장단에 따라 각 3년 및 4년으로, 마약거래, 테러, 조직매춘, 매춘, 탈세 또는 범죄단체조직을 통한 범죄 등의 경우 총 구속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영미법상으로는 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법은 제1심에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을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 구속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제92조 제3항).

한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되었다(제92조 제2항).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은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항소심 및 상고심이 아무런 제한 없이 3차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라는 제한요건을 부가하였다. 여기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열거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을 3차 갱신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가. ( 94 )

현행법	개정법
第94條(保釋의 請求) 被告人, 辯護人 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는 拘束 된 被告人의 保釋을 請求할 수 있 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 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 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현행법 제94조),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로 규정되어 있었다(현행법 제214조의2 제1항). 개정법은 보석의 청구권자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 97 )

현행법	개정법
第97條 (保釋·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保釋에 關한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檢事가 3日以內에 意見을 表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釋許可에 對하여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 ② 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第1項과 같다. <신 설> ③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하고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긴급히 하여야 할 때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보석 등에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법원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검사의 의견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속한 보석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석절차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하였다(제97조 제3항).

정부원안에서는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을 모두 통합하고, 석

방을 긴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석방제도의 통합이 보류되었고, 긴급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도록 한 정부원안도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의부의 경우 3명의 법관 명의로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왔으나, 의견요청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재판장 단독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법 제97조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 명의로 검사에게 보석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행법 제96조 제1항 단서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는 검사의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위 규정으로 인하여 3일 동안 보석결정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나 오히려 신속한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에 지장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구나 보석에 관한 검사의 의견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동의간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가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 98 )

현행법	개정법
第99條(保釋의 條件)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고 其他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p>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p> <p>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p> <p>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p> <p>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p> <p>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p> <p>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p> <p>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p> <p>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p>
--	---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현행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의 납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주거제한 또는 피고인을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조건하에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두 제도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그 조건이 보증금 또는 주거제한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무상 보석은 원칙적인 석방제도로 운영되고,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질병이나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석방하였다가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석방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원안에서는 보석 조건으로서 보증금 이외의 비금전적 조건이 독립된 조건으로 부과됨을 전제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제도 등을 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로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석방제도의 통합은 보류되었다. 다만, 정부원안의 석방조건 다양화는 보석조건에 한하여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현행법상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 납입을 본래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덧붙여 주거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현행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사람에는 보석을 통한 석방기회가 부여되기 어렵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보석보험증권의 제출을 허가할



경우 출석담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석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법은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비금전적 보석조건을 가능하게 하여 무자력자에게도 석방기회를 넓혀 주어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석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 제98조 제1호의 보석 조건은 피고인 본인이 출석을 약속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고면서 작성하는 서약서의 제출이다. 이는 가장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보석조건이지만, 출석담보력이 다른 보석 조건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제1호의 조건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제98조 제2호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으로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보석조건을 변경하여 제98조 제8호에 따라 정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보석조건이다.

개정법 제98조 제3호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그 변경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의 수인이다. 현재의 실무상으로도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로 부과되는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조건은 다른 보석 조건과 함께 널리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제98조 제4호는 피해자나 증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이다. 특히 성폭

력 피고인이나 가정폭력 관련 피고인 등 피해자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효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다.

개정법 제98조 제5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다. 현재 수사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그 부모 등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실무를 제도화하여 피고인의 보호자 등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 자력이 없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유효적절하게 부과함으로써 보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보석조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다(제100조의2).

개정법 제98조 제6호는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이다.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이나 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재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피고인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외여행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그 결정을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출국하고 있다. 개정법 제98조 제6호는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을 보석 조건의 하나로 입법화한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이 조건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보다는 다른 조건에 부가하는 부대조건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제98조 제6호에 출국금지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개정법 제98조 제7호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석조건이다. 종래 실무상 피해자와 이른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피해를 변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서 불합리한 변상금액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공박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변상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개정법 제99조 제8호는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보석조건이라고 하겠다. 현행법 제100조 제3항은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에 갈음하여 왔다. 개정법은 유가증권 등에서 더 나아가 담보제공이 추가되었는데, 해석상으로는 담보제공이 별도의 보석조건으로 도입됨으로써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다양한 담보제공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보증보험증권 이외에 다양한 담보제공 방법이 보석조건으로 사용될지 여부는 향후 실무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개정법 제98조 제9호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보석조건 이외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보석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보석조건은 사안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제9호를 둠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보석조건들의 다양화는 실무 운영을 통하여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99 )

현행법	개정법
第98條(保釋과 保證金) ①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被告人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保證金額을 定하여야 한다. 1. 犯罪의 性質, 罪狀 2. 證據의 證明力 3. 被告人의 前科, 性格, 環境과 資産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法院은 被告人의 資産程度로는 納入하기 不能한 保證金額을 定할 수 없다.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현행법 제98조(보석과 보증금), 제99조(보석의 조건)의 규정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대로 맞바꾸어, 현행법 제99조를 개정법 제98조로, 현행법 제98조를 개정법 제99조로 하였다.

개정법 제99조는 조문의 제목을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4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실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정법 제98조 제7호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 공탁이나 담보제공이 새로운 보석조건으로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 100 )

현행법	개정법
第100條(保釋執行의 節次) ①保釋의 許可決定은 保證金을 納入한 後가 아니라면 執行하지 못한다.	第100條(보석집행의 절차) ①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被告人 以外의 者의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 許可할 수 있다.	③-----피고인 외의 자가제출한----- -----
④ 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석조건 중 조건을 먼저 이행하여야만 피고인을 석방하는 방식과 보석허가결정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제98조

제1호 본인 서약서, 제2호 본인 보증금 약정서, 제5호 제3자의 출석보증서, 제7호 피해액 공탁 조건, 제8호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선이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선석방 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양한 보석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석허가결정시 선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인 조건의 선이행 여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0조 제1항).

한편,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 제98조의 보석조건이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법원이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0조 제5항). 예컨대, 법원이 제9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경찰공무원에 의한 관찰을 수인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정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감시하고 그 동태를 보고받거나 도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제98조 제6호를 보석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접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석조건 준수를 담보할 수 있다.

( 100 2)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p>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석보증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개정법 제98조 제5호가 정한 제3자의 출석보증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출석보증인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출석보증서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력이 없어질 것이므로, 출석보증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여 출석보증인이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 102 )

현행법	개정법
第102條(保釋等の取消와 保證金の沒取) ①(생략) ②保釋을 取消할 때에는 決定으로 保證金の全部 또는 一部를 沒取할 수 있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p>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p> <p>1. 도망한 때</p> <p>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p> <p>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p> <p>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	---

보석허가결정 이후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허가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였다(제102조 제1항).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석허가 결정 취소 사유(제102조 제2항 각호)도 현행법 제102조 제1항 각호와 마찬가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석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2조 제3항). 이와 같은 제재는 보석허가결정의 취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 석방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감치 등을 처하는 방법은 석방조건 위반을 이유로 재구속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석방조건 위반이나 조건 위반의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 재구속을 대신하여 석방조건 준수를 경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다.

이러한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02조 제4항).

한편, 현행법 제102조 제2항의 보증금 몰취 규정은 개정법 제103조 제1항에 옮겨 규정하였다.

( 103 )

현행법	개정법
第102條(保釋等의 取消와 保證金의 沒取) ①被告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0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令狀의 執行停止는 그 會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

<p>期중 取消하지 못한다.&lt;개정 1995.12.29&gt;</p> <p>1. 도망한 때</p> <p>2. 도망하거나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3.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p> <p>4. 被害者,  당해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事實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的  理由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的  理由가  있는  때</p> <p>5. 住居의  제한  其他  法院이  정한  條件을  위반한  때</p> <p>②保釋을 取消할  때에는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取할  수  있다.</p> <p>第103條(有罪判決確定과  保證金의  沒取)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後  執行하기  爲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取하여야  한다.</p>	<p>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正當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檢事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p>
---	---

현행법은 보석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의적 보증금 몰취는 제102조 제2항에, 형 집행을 위한 불출석을 이유로 한 필요적 보증금 몰취는 제10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보증금 몰수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문위치를 제103조에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보석취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몰취는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직권뿐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103조 제1항). 또한 보증금 이외에 피고인이 납입한 담보(제98조 제8호)도 몰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104 )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u>보증금</u> 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 ----- <u>--보증금 또는 담보를</u> ----- --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납입 외에 담보제공(제98조제8호)이 추가됨에 따라 몰취 대상으로 보증금 외에 “담보”를 추가하고(제103조), 몰취 후 남은 나머지를 환부하는 대상에도 “담보”를 추가하였다.

( 104 2)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104조의2(보석조건외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피고인이 더 이상 보석조건을 준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석조건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04조의2 제1항). 이는 종래에도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담보금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조건(부수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독일 형사소송법 제116조), 이러한 조건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고, 법원의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23조). 개정법은 독일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자동실효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더 이상 보석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의 결정 없이 보석조건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제98조 제8호 소정의 보증금 또는 담보에 관한 보석조건은 자동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104조의2 제2항).

7.

가. ( 200 3)

현 행 법	개 정 법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



( 200 4)

현행법	개정법
<p>第200條의4(緊急逮捕와 拘束令狀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が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令狀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p>	<p>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 ----- 지체 없이----- -----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li> <li>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li> </ol>

<p>&lt;신 설&gt;</p>	<p>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p>
<p>&lt;신 설&gt;</p>	<p>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법 제20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긴급체포 후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하되, 그 시한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현행법상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를 “지체 없이”로 바꾸고 그 최장시한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이유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시의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사함이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 인치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긴급체포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서 영장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은 향후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without unnecessary delay)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지체”에 필요한 것이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정부원안 중 “불필요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긴급체포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4항). 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제200조의4 제4항 제1호),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사유(같은 항 제2호),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같은 항 제3호),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같은 항 제4호) 등인데, 특히 체포사유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제200조의4 제4항 제2호). 이를 통하여 긴급체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200조의4 제5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200조의4 제6항).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 200 5)

현행법	개정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第200條의5(準用規定) 第72條, 第75條,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86條 내지 第91條, 第93條, 第101條第4項 및 第102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p>	<p>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 -----.</p>

현행법은 제72조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 하면서, 제200조의5에서 제72조, 제88조를 준용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피 의자를 구속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준용되었다. 개정법은 현행 법이 취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제200조의5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는 대신, 준용규정(제200조의6)에서 준용대상 규정 중 제72조, 제88조를 삭제 하였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규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관 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마저도 형사소송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오해할 정도로 조문 자체로 쉽게 인식되지 아 니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88조의 규정을 준용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 것이다.

8. ( 201 2)

현행법	개정법
第201條의2(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 審問) ①第200條의2·第200條의3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된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 請求받 은 地方法院判事는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 族, 형제자매나 同居人 또는 雇用主 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被疑者를 審 問할 수 있다. 이 경우 被疑者 이외의 者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서도 그 審問을 申請할 수 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 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하여야 한다.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하여 第1項의 審問을 申請할 수 있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p>음을 말하고, 被疑者 訊問調書에 判事의 審問을 申請하는지 여부를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被疑者 訊問調書에 그 내용을 記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被疑者 作成의 確認書 기타 被疑者의 意思를 표시한 書面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第1項 외의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 請求받은 地方法院判事は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拘束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拘引을 위한 拘束令狀을 발부하여 被疑者를 拘引한 후 審問할 수 있다.</p>	
<p>④地方法院判事は 第1項의 경우에는 즉시, 第3項의 경우에는 被疑者를 引致한 후 즉시 審問期日과 場所를 檢事·被疑者 및 辯護人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檢事は 被疑者가 逮捕되어있는 때에는 그 期日에 被疑者를 出석시켜야 한다.</p>	<p>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檢事·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檢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p>
<p>⑤檢사와 辯護人은 第4項의 審問期日에 出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p>	<p>④檢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第1項 및 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p>	<p>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p>

<p>어 地方法院判事は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 搜查상의 秘密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 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地方法院判事は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審問한 후 被疑者를 拘束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第3項의 拘束令狀請求에 기하여 拘禁을 위한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 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 다.</p>
<p>⑧ 被疑者審問을 하는 경우 法院이 拘 束令狀請求書·搜查關係書類 및 證 據物을 接受한 날부터 拘束令狀을 발 부하여 檢察廳에 返還한 날까지의 期 間은 第202條 및 第203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 지 아니한다.</p>	<p>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 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 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 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 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⑨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 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 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 이 있다.</p>	<p>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 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 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 이 있다.</p>
<p>⑩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 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 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p>	<p>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p>

<p>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p> <p>①第71條, 第72條, 第75條, 第81條 내지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86條, 第87條第1項 및 第88條 내지 第91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209條(準用規定) 第71條, 第72條, 第75條, 第81條第1項 本文,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 乃至 第91條, 第93條, 第101條第1項, 第102條第1項 本文(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被疑者拘束 에 準用한다.</p>	<p>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p> <p>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제51조·제53조·제56조의2·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p>
--	---

가. ( 201 2 1 , 2 )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당시에는 법원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어 체포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현행법 제201조의2 제1항).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적 기

준6)에 미달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법은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신구속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심문제도를 도입하였다(제201조의2 제1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제201조의2 제1항 후문) 신속한 심문을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되,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제201조의2 제2항).

( 201 2 4 )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현행법 제201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개정법 제201조의2 제4항으로 조항 위치만 변경된 채 그대로 존치하였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함으로써 영장재판이 사실상 본안재판화되어 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재

6) 국제인권규약 중 B규약 제9조 제1항 제1문 전단은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c)호에서 “범죄를 범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범죄예방 또는 범죄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게 인치할 목적으로 실시된 사람의 합법적인 체포·구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은 “제1항 (c)호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사람을 누구나 신속히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관헌에게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이 본안재판화로 흐르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실무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1 2 6 , 10 )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영장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영장처리사무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영장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조서와 같은 방식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법원사무관 등이 심문조서를 작성하되 심문의 일시와 장소, 심문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심문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였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영장심문조서를 공판조서에 준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공판을 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 법원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결국 영장심문조서를 공판조서에 준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리하여 개정법 제201조의2 제6항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1조의2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3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심문기일에 동석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었다.

( 201 2 10 , 209 )

개정법은 제201조의2 제10항에서 구인 후 유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를 준용규정 대상에 추가하였다. 현행법 제201조의2 제11항에서는 제72조를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나, 제72조는 구

속영장 발부를 위한 절차규정으로 그 성질상 구인영장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준용대상 규정에서 제72조를 삭제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조문(제201조의2)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전청문을 규정한 제72조를 ‘피의자’ 구속에 준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72조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준용규정보다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신장, 알기 쉬운 인신구속절차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제200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제88조가 삭제되었다.

9. ( 214 2)

현 행 법	개 정 법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①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 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管 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 를 請求할 수 있다. <신 설>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①체포 또는 구속----- ----- ----- 兄弟姉妹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 주----- -----.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請求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院은 第3項의 審問없이 決 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p>조건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 準用한다.</p>	<p>----- -----</p>
<p>⑦第2項과 第3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p>	<p>⑧제3항과 제4항----- -----.</p>
<p>⑧檢事·辯護人·請求人은 第3項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p>	<p>⑨-----제4항----- -----.</p>
<p>⑨(생략)</p>	<p>⑩(현행 제9항과 같음)</p>
<p>⑩ 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어 法院은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 搜查上의 秘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p>	<p>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⑪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第3項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 法官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p>
<p>⑫法院이 搜查關係書類와 證據物을  접수한 때부터 決定후 檢察廳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第200條의2 第5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第202條·第203條 및 第205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p>	<p>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第214條의3(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①第21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 한 逮捕 또는 拘束適否審査決定에 의 하여 釋放된 被疑者가 逃亡하거나 罪證을 湮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p>②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被疑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 또는 拘束하지 못한다.</p> <p>1. ~ 4. (생략)</p> <p>第214條의4(保證金の 沒收) ①法院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된 保證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p> <p>1.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를 第214條의3第2項에 열거된 사유로 再次 拘束할 때</p>	<p>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第214條의3(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①제214조의2제4항-----</p> <p>-----</p> <p>-----</p> <p>-----</p> <p>-----</p> <p>-----</p> <p>-----</p> <p>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第214條의4(保證金の 沒收) ①-----</p> <p>-----</p> <p>-----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p> <p>-----</p> <p>-----</p> <p>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p> <p>-----</p> <p>-----</p>
---	---



우에는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2항). 그런데 개정법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일률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현행법보다 24시간을 연장하고,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현행법보다 24시간을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주말이나 연휴기간 중에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종래의 실무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서도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4항, 제201조의2 제6항).

10. ( 217 )

현행법	개정법
第217條(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令狀 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前條第1項第2號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押收한 物件은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 못한 때에는 即時 還付하여야 한다. 但, 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押收, 搜索令狀의 發付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을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가 소지, 보관, 소유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종래에 대립되어 있었다. 당초 정부원안은 이러한 견해를 절충하여, 피의자의 소유 물건에 대하여 그 점유자를 불문하고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경우 피의자 소유 물건을 보관 중인 제3자의 주거에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게 되므로 피의자 소유물을 대상물에서 제외하는 등 긴급압수·수색·검증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에 피의자 소유물을 제외할 경우 수사기관의 마약류 등 수사실무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반론이 제시되어, 결국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기로 의결되었다.

다만, 현행법 제217조 제1항에는 긴급압수·수색·검증을 함에 있어 긴급성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 제217조 제1항에서는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하여 긴급압수·수색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기간 동안 긴급압수·수색이 가능하였으나, 정부원안에서는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한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12시간 이내로 한정하였다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였다. 이는 12시간 이내로 할 경우 야간에 긴급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수정의 취지에 맞추어 긴급체포에 따른 긴급압수·수색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를 계속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은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제217조 제2항), 이를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제217조 제3항).

II.

1. ( 198 1 )

현행법	개정법
第198條(注意事項) 檢事, 司法警察官吏 其他 職務上 搜查에 關係 있는 者는 秘密을 嚴守하며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搜查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198조 제1항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원칙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판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강제처분이므로, 그 여부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원래 정부원안에서는 제198조 제2항에 “검사·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목록작성의무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목록작성의무에 관한 정부원안 제198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개정법 제198조 제1항에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2.

( 243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p>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현행법 제34조에는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조사 중임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후는 물론, 조사 중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 변호인 등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다만 피의자에 대한 신문 중에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과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참조).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조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삭제하고 “신문”에 한정하였다.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결국 정부원안대로 “정당한 사유”를 해석에 맡기기로 하였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3조의2 제2항). 이 규정은 당초

정부원안에는 없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신설되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하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43조의2 제3항).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제243조의2 제5항).

### 3.

가. ( 244 2)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	

	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
	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에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 이 진정성립 요건에 추가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고지만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입법례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피의자에 대하여 고지만으로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하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 끝에 결국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되,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만 하고서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만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에 영상녹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영상녹화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녹화가 사실상 사전 리허설을 거친 결과물이 됨으로써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이 영상녹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모든”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였는데(제244조의2 제2항),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sup>8)</sup> 기억 환기를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 221 )

현행법	개정법
第221條(第三者의 出席要求) 檢事 또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

8)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제312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그 조사에 참여한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의 진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부원안에 대하여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법사위에 보내 온 의견에 따르면, 수사의 투명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였고, 참여연대도 영상녹화물을 조서 대신 법정에서 제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칫 비디오재판을 초래해 조서재판보다 오히려 더 공판중심주의를 구축(驅逐)할 위험성이 크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우량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것을 불량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정부원안은 삭제되었다.

는 司法警察官은 搜查에 必要한  때에 는 被疑者 아닌 者의 出席을 要求하 여 陳述을  들을 수 있고 鑑定, 通譯 또는 翻譯을 委囑할 수 있다.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 우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 다.
--	---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제312조 제4항)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원진술자의 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을 추가하고, 이와 더불어 참고인에 대해서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직접주의를 침해하고, 반대신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논의 끝에 참고인에 대하여도 동의를 요건으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의결되었다. 참고인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개정법 제221조 제1항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개정법 제244조의2의 규정에 준해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 244 3)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li> <li>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li> <li>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li> <li>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li> </ol> <p>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p>

	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야 한다.
--	---

현행법 제200조 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술거부권 고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다. 개정법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피의자가 한 일체의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제244조의3 제1항). 또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제244조의3 제2항).

**5. ( 244 4)**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법에서는 수사과정의 투명화, 적법화를 위하여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기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제244조의4 제1항). 여기서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라 함은 예를 들어 피고인이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한 시각, 식사를 한 시각, 대질신문의 경위 및 시간, 조사 중간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경위와 시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증감,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제244조의4 제2항, 제244조 제2항).

수사과정 기록제도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제244조의4 제3항).

수사과정에 관한 기록은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등에 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III.

1. ( 260 )

현행법	개정법
<p>第260條(裁定申請) ①刑法 第123條 乃至 第125條의 罪에 對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者는 檢事로부터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한다는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 所屬의 高等檢察廳에 對應하는 高等法院에 그 當否에 關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p>	<p>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申請은 第258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書面으로 檢事 所屬의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을 經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p>

	<p>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	--

가.

현행법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로 한정하고 있었고, 그 밖에 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헌정질서위반범죄, 집단살해범죄, ②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한 범죄, ③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뇌물, 업무상횡령·배임 등 부패범죄, ④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중요한 선거범죄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개정법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범죄를 전면 확대하였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였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발인에게까지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재정신청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어, 결국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또는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인정하기로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남신청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는 검찰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제260조 제2항). 다만, 재정신청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 있는 때(제260조 제2항 제1호),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제260조 제2항 제2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60조 제2항 제3호)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제260조 제3항).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항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하는 재정신청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를 개정법 제260조 제4항에 옮겨 직접 규정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당초 정부원안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경우 일부 고등법원을 제외하고는 대개 고등법원 형사부는 1개만 있는데, 당해 고등법원은 부심판결정된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므로 전심관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인의 고등법원에의 접근 편의성,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제1심 형사단독판사가 본안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실무상으로는 항소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등검찰청의 항고까지 마친 재정신청사건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결국 현행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사건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의결되었다(제260조 제1항). 이에 따라 고등법원 형사부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정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개정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개정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제5조 제1항). 그리고 개정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조 제2항).

한편 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10일,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부칙 제5조 제3항).

2.

현행법	개정법
<p>第261條(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支廳長의 處理) ①裁定申請을 受理한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p> <p>1. 申請이 理由 있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即時 公訴를 提起하고 그 趣旨를 所轄 高等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2. 申請이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그 記錄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7日以內에 所轄 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送致한다.</p> <p>②前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記錄을 受理한 高等檢察廳檢事長은 다음</p>	<p>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p>

<p>과 같이 處理한다.</p> <p>1. 申請이 理由 있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그 記錄에 公訴提起命令書를 添附하여 所轄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送致하고 그 趣旨를 所轄高等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2. 申請이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30日以內에 그 記錄을 所轄高等法院에 送致한다.</p>	<p>2. 申請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p>
<p>第262條(高等法院의 裁定決定)</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裁定申請書와 그 記錄을 受理한 高等法院은 抗告의 節次에 準하여 20日以內에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裁定決定을 하여야 한다. 法院은 必要있는 때에는 證據를 調査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p>1. 申請이 法律上의 方式에 違背하거나 理由 없는 때에는 申請을 棄却한다.</p> <p>2. 申請이 理由 있는 때에는 事件을 管轄地方法院의 審判에 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 申請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申請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p> <p>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p>

<p>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抗告할 수 없고 前項第1號의 決定이 있었던 事件에 對하여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訴追할 수 없다.</p>	<p>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p>
<p>③高等法院이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卽時 그 正本을 裁定申請人, 被疑者와 所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p>	<p>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p>
<p>④事件을 地方法院의 審判에 付하는 決定의 裁判書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p>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⑤第1項第2號의 決定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決定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內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p>	<p>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가.

( 261 )

현행법은 재정신청서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정법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제260조 제3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하였다(제261조 제1항).



( 262 )

(1)

현행법은 재정신청 처리기간을 재정신청서와 기록을 수리한 날부터 20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을 지나 결정하였다고 하여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990. 12. 13.자 90모58 결정 참조). 실무상으로도 20일이라는 기간 자체도 현실성이 적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이 고등법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판부의 증설이나 심리시간의 증가 등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건 지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심리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졸속심리, 부실심리의 우려가 있고, 모처럼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심리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두면 고소인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된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고려와 심리의 충실 및 피의자의 장기간의 지위 불안의 해소와 심리의 신속 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심리기간을 현실성이 있게 3개월로 규정하고 그 준수를 기대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262조 제2항).

(2)

우선 개정법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2조 제1항). 이 규정은 당초 정부원안에는 없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신설되었다.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제120조에서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의자 및 재정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피의자에 대한 통지 시한을 10일로 명시하였으나,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규칙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필요한 경우 검증, 감정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데, 재정법원이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개정법에 이를 명문화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를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석론에 맡기기로 하여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정법에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262조 제3항). 이 규정도 당초 정부원안에는 없었으나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특히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및 재정신청을 민사사건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 (3)

현행법은 재정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심판회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

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당초 정부원안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본안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심판회부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까지 불복할 수 있게 하면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향후 대법원 판례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정법원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하기로 의결하였다(제262조 제4항).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가 주목된다.

3. ( 262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p>

개정법은 제266조의3 이하에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도(제294조의4),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제도(제59조의2)를 도입하고 있는 등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는 현행법보다 그 대상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른바 준기소절차의 구조에 관하여는 대체로 수사절차가 아닌 재판절차로서 특히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라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이 무분별하게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당초 정부원안에는 없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한 끝에,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제262조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까지 열람·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2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 262 3)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
	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

	<p>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	---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현행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269조에서 재정신청인에게 절차에 소요된 국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비용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76조, 제177조).

당초 정부원안은 일본과 같이 국가비용만을 부담하게 하고, 피의자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제262조의3 제1항 참

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2조의3 제2항). 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정신청의 남발을 상당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법원이 재정결정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자력이 없는 재정신청인의 신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 5. ( 262 4)

현행법	개정법
第262條의2(公訴時效의 停止) 第260條의 規定에 依한 裁定申請이 있을 때에는 前條의 裁定決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進行을 停止한다.	第262條의4(公訴時效의 停止)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즉시항고절차의 종료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이 규정은 재정결정의 ‘확정’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이는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제262조 제4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개정법 제262조 제1항의 개정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함께 신설하였다(제262조의4 제2항).

6.

현 행 법	개 정 법
<p>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p> <p>①法院은 第26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事件이 그 法院의 審判에 付하여진 때에는 그 事件에 對하여 公訴의 維持를 擔當할 者를 辯護士中에서 指定하여야 한다.</p> <p>②前項의 指定을 받은 辯護士는 當該 事件과 이와 併合된 事件에 對한 公訴를 維持하기 爲하여 終局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檢事로서의 모든 職權을 行使한다. 但, 司法警察官吏에 對한 搜查의 指揮는 裁判長이 認定한 事項에 限한다.</p> <p>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의 職務</p>	<p>&lt;삭 제&gt;</p>

를 行하는 辯護士는 法令에 依하여 公務에 從事하는 者로 看做한다.	
④法院은 指定을 받은 辯護士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거나 其他 特殊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언제든지 그 指定을 取消하고 다른 辯護士를 指定할 수 있다.	
⑤指定된 辯護士는 國家로부터 法律로써 定한 額의 報酬를 받는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사건기록에 재정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으로 송치하고, 관할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제262조 제5항, 제265조).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면서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에게 사건기록 및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재정결정서 원본을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대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75조 참조). 이에 대하여는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법원의 부심판결정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논의 끝에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의결되었다(현행법 제265조 삭제, 개정법 제262조 제5항, 제6항).

이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고, 사건기



록을 함께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2조 제5항). 그리고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262조 제6항).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와 검사의 공소유지는 당초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검찰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소유지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 ( 264 2)**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당초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전례가 있으므로, 공소유지에 소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를 취소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 제기를 결정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4조의2).

다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사건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부 공소취소를 하거나 적용법조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위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향후 학설과 실무운영에서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 IV.

## 1. ( 266 2)

현행법	개정법
<신설>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에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과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등이 혼재되어 있다.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미리 분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법은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에 사건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여부에 따라 자백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구별하여 따로 기일을 정하여 재판 진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법원 재판예규「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sup>9)</sup>가 2002. 3.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진술거

9)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 5. 21.부터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부권이 있으므로 대법원 재판예규로서는 답변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제266조의2).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66조의2 제1항).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66조의2 제2항).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p>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li> <li>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u>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u></li> <li>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등</li> <li>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li> </ol> <p>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p>
--	--

	<p>이하의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p> <p>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 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p> <p>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피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p>
--	---

	<p>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p> <p>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p> <p>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p>
--	--

	<p>할 수 있다.</p> <p>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p> <p>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p> <p>3.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p> <p>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p> <p>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p>
--	---

	<p>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p> <p>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가. ( 266 3)

현행법 제35조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 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서류나 증거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학설상으로는 변호인은 검사가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고,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충실하게 시행해 가면서 법정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받게 되자, 아직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실무상 문제로 되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266 3, 266 11)

(1)

개정법은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②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 ③ 위 서류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등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개정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의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

기록 등을 포함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당해사건에 관한 서류등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그 취지는 당해사건 기록 이외에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증거개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이 규정은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없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데, 굳이 피고인에게까지 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이 단서가 신설되었다.

증거개시 대상인 서류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제266조의3 제6항).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특수매체의 등사의 범위에 아무 제한이 없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를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논의 끝에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2)

개정법은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검사의 증거개시범위에 맞추어 피고인측 증거개시범위를 규정하였다. 즉,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66조의11 제1항).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③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266 3, 266 11)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2항). 그러나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거개시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3 제5항). 다만 정부원안에서는 당초 “검사·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개정안 제198조 제2항)는 규정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향후 수사실무 운영에서 개정법 제266조의3 제5항의 실효성 확보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검사가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측도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2항).

한편,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할 사유가 있어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공판기일에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술의 요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개정안 제266조의3 제6항)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정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열람·등사한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신속한 공판준비에 협력하도록 한 정부원안(개정안 제266조의3 제6항)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 ( 266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이에 대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서류에 대한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또는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3항).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피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2항). 법원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66조의4 제3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4항).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제266조의4 제5항).

한편, 검사가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법 제266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제266조의11 제5항).

( 266 16)

개정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16). 이는 개시된 증거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3.

가. ( 266 5)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p> <p>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p> <p>③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준비를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과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 등 다양한데, 당해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일을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공판기일의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많다.<sup>10)</sup>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판준비에 관하여 공소장부분을 송달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현행법 제27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법 제274조). 그러나 사건의 심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준비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5). 개정법의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인 반면, 「국민의 형

10) 미국의 경우 기소인부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비심문절차나 증거개시제도 및 유죄답변협상제도 등을 통해 공판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검사는 증거방법으로 이용될 목적물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독일 형소법 제214조 제4항), 증인으로 신문할 증인 또는 감정인을 직접 소환하고(동조 제3항), 그 성명과 주소를 재판부 및 피고인에게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22조 제1항). 또한 피고인도 사전에 관련 증거가 조사되어야 할 사실을 명시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9조 제1항). 프랑스의 경우에도 중죄법원의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24시간 전에 검사 및 피고인 등 관계당사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소법 제281조). 일본도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미리 상대방에게 서증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증인 또는 감정인의 성명, 주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일본 형소법 제299조 제1항),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의2는 “소송관계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가능한 한 증거의 수집 및 정리를 하여 심리가 신속하게 행하여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전준비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형소규칙 제178조의2 내지 제178조의11).

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재판에서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제266조의5 제2항).

이러한 공판준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어야만 집중심리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제266조의5 제3항).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향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실무운영에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266 6)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분을 상</p>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 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	--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제266조의6  
 제1항), 재판장은 이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266조의6 제2항).  
 쌍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부분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6  
 조의6 제3항). 기소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쌍방의 입증계획 등을  
 미리 받아 심리의 집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공판준비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6 제4항).

( 266 7, 266 8)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 다. ②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p>수 없다.</p> <p>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p> <p>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p> <p>③법원은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p> <p>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p>
--	--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심리를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으나, 효율적인 공판준비기일의 운영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개정법은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때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7 제1항, 제2항). 법원은 합의부 전체가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7 제3항).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되, 만일 이를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7 제4항).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제266조의8 제1항, 제5항).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8 제5항).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정하였다(제266조의8 제4항).

## ( 266 9)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p>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p> <p>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p> <p>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p> <p>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p> <p>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p> <p>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p> <p>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p> <p>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p> <p>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p> <p>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p> <p>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p> <p>②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p>
--	--

개정법 제266조의9는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공소장의 보완과 변경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고(제1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호).

② 쟁점의 정리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호).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쟁점 정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66조의6 제2항). 그 밖에 공소사실에 포함된 수치의 계산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제4호).

③ 증거의 신청 및 채부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거나(제5호),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고(제6호), 일방의 증거신청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제7호), 증거 채부(제8호) 및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제9호).

④ 기타

법원은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개시에 관한 신청(제266조의4)의 당부를 결정할 수 있고(제10호),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제11호),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2호).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266조의9 제2항, 제296조 제1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9 제2항 제304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96조 제2항, 제304조 제2항).

( 266 10)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제266조의10 제1항).

당초 정부원안 성안 과정에서는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관하여 공판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판준비기일조서가 공판조서와 같이 자세하게 작성되면 공판준비기일이 본안재판화됨으로써 공판기일의 심리절차가 형식적인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될 염려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확인된 쟁점 및 증거의 정리결과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제266조의10 제2항).

( 266 12)

현행법	개정법
<신설>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제1호)나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제2호),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제266조의12). 그러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12 단서).

( 266 13)

현행법	개정법
<신설>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
	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
	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	
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	
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법은 제266조의13에서 공판준비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권효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66조의13 제1항). 다만 법원은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이에 구애받지 않은 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2항).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쟁점 정리 및 증거채부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공판준비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 한 공판기일에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실권효 규정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실제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85조에 준하여 예외사유를 확대하기로 하여 개정법과 같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실권효 규정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공판준비절차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향후 실무운용상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66 14, 266 15)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14, 제305조).

한편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6조의15).



V.

1.

가. ( 150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p> <p>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p>

실무상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증인의 출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정법은 증인의 출석 확보를 위하여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나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0조의2 제1항).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는 모사전송기,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82조의 취지를 받아들여, 개정법은 증인신청인으로 하여금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제150조의2 제2항). 향후 실무운영에서 증인신청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개정법의 취지에 맞추어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151 )

현행법	개정법
<p>제151조(不出席과 過怠料等) ① 召喚 받은 證人이 正當한 事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하고 出席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費用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p>	<p>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p>
<p>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p>	<p>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 및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p>
	<p>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p>
	<p>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p>
	<p>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p>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로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증인 출석 확보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이미 민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증인이 이러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민사소송법 제311조).

개정법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증인이 이러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1조 제1항, 제2항).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곧바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원안이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수정되었다.<sup>11)</sup>

과태료와 감치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51조 제8항).

2. ( 184 4 )

현행법	개정법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그節次)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그節次)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현행법 제416조의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거보전에 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이 없었다. 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되 개별적으로 문제되는 증거보전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을 허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여,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4조 제4항).

11) 그런데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개정법이 정부원안과는 달리 반드시 과태료를 거쳐야만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3. 1

( 221 2)

현행법	개정법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查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현행과 같음)
②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任意의 陳述을 한 者가 公判期日에 前의 陳述과 다른 陳述을 할 念慮가 있고 그의 陳述이  범죄의 證明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삭 제>
③前2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③제1항 ----- -----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④제1항----- -----
⑤判事는 특별히 搜查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에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⑥判事は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 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 付하여야 한다.	한다. ⑥-----제1항----- ----- ----- -----
---	--

현행법 제221조의2 제2항은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sup>12)</sup>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개정법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법 제221조의2 제2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현행법에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법 제221조의2 제5항), 판사는 제221조의2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12)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 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중략)…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들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헌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법률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이 나머지 법률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종합적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위헌인 법률조항만을 위헌선언하게 되면 전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에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을 넘어서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 전체를 위헌선언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증인신문절차의 참여권 및 반대신문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21조의2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증인신문절차의 핵심적 구성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제5항을 위헌선언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도 함께 위헌선언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리하였다(제221조의2 제5항).

4. ( 267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p> <p>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p> <p>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현행법에는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93조와 같은 집중심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실무상으로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중심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러

한 종래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제267조의2 제2항).<sup>13)</sup> 그리고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267조의2 제4항). 이는 혼시규정으로 보이기 는 하나, 향후 실무운영에서 가급적 이 원칙을 준수하는 실무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조항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중요사건의 심리 충실화 및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경죄사건 처리의 간이·신속화에 초점을 둔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이 전제로 된 것인데, 정부원안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정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전부 입법화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실무운영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집중적인 심리를 하지 않으면 재판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법관의 심증 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경질 등 직접주의의 원칙이 흐트러짐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심리의 원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실무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정법은 공판기일의 일괄지정제도도 도입하였다(제267조의2 제3항). 이는 종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에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 공판기일 전 또는 1회 공판기일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사이에 기일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는데

13) 대법원 재판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 일괄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예규 제9조 제2항 제5호)고 규정함으로써 집중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예규 제9조 제2항 제4호), 개정법의 위 조항은 위 재판예규의 내용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집중심리의 원칙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그 구현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아무리 집중심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과 입증을 띄엄띄엄 하거나 증인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나갈 수 없다. 개정법은 증인의 출석확보를 위해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제150조의2 제2항)는 규정을 신설하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기는 하나(제151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집중심리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기는 쉽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7조의2 제5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시기에 늦은 증거의 신청이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는 그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된 증거 조사를 취소하는 등 절차상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집중심리의 원칙이 잘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 5. ( 275 )

현 행 법	개 정 법
第275條(公判廷의審理) ① 公判期日에는 公判廷에서 審理한다.	第275條(公判廷의審理) ① (현행과 같음)
②公判廷은 判事와 書記官 또는 書記가 列席하고 檢事가 出席하여 開廷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p>다. ③檢事の座席은 辯護人の座席과 對等하며 被告人은 裁判長の正前に座席한다.</p>	<p>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p>
--	---

현행법 제275조 제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列席)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개정법은 ‘서기관 또는 서기’ 를 현행 법원공무원의 직급명칭에 부합하도록 ‘법원사무관 등’ 이라고 개정하고, 일본식 표현인 ‘열석(列席)’ 을 ‘출석’ 으로 개정하였다.

현행법은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고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위치한다는 규정 아래,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049호)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서로 마주보고, 피고인의 좌석은 재판장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대등하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의 한 당사자인 피고인이 절차의 객체 또는 신문의 대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좌석과 떨어져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이 대등함을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켰다(제275조 제3항).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고 규정하였다(제275

조 제3항 단서).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형사법정구조와 유사하게 이와 같이 수정의결된 것인데, 이로써 종래 피고인이 증거조사의 객체 또는 신문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법정구조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6. ( 275 3)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 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공개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화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는 종래의 조서재판, 서면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의 활발한 구두변론을 통해 사건의 실제관계를 파악하자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7. ( 277 )

현 행 법	개 정 법
第277條(輕微事件等과 被告人의 不出席) 多額 100萬圓 以下の 罰金 또는 科料에  해당하거나 公訴棄却 또는 免訴의 裁判을 할 것이 明白한 事件에  관하여는 被告人의 出席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被告人은 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p>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p> <p>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p> <p>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p>
--	---

현행법은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에만 불출석 재판을 허용해 왔다(제277조). 그러나 법정형이 다액 100만원 이하인 형사공판사건이 거의 없어 불출석재판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다. 개정법은 불출석 재판을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다툼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개정법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현행법의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이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의 규정이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이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불출석허가를 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인정신문(제284조)과 판결 선고시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만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심리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을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 283 2)

현행법	개정법
第289條(被告人의 陳述拒否權) 被告人은 各個의 訊問에 對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다.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의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제28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었고,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절차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왔으나, 재판장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개정법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를 받아들여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고, 특히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 위치를 인정신문(제284조) 앞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인정신문에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란을 해소하였다. 즉, 종래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의 요지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신문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해 왔으나,<sup>14)</sup> 개정법은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14) 일본에서도 검사의 공소장 낭독 이후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및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2항).

9.

가. ( 285 )

현행법	개정법
第285條 (檢事の冒頭陳述) 裁判長 은 檢事로 하여금 公訴狀에 의하여 起訴의 요지를 陳述하게 할 수 있 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 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 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 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모두진술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다. 원래 형사소송법이 1954. 9. 23. 제정 당시부터 검사의 모두진술에 관해서는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심리에 소송경제를 꾀한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검사의 모두진술이 임의적인 절차로 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은 향후 진행될 심리의 쟁점과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는 지적이 있었고, 외국의 입법례<sup>15)</sup>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를 필수적인 절차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15) 독일의 경우에는 공판의 사건의 호명과 함께 시작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후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43조 제3항). 일본의 경우에도 검찰관은 먼저 기소장을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90조 제1항).

개정법은 검사의 모두진술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다. 종래 재판장이 검사로 하여금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던 것을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사안에 따라 굳이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85조 단서).

( 286 )

현 행 법	개 정 법
第286條(被告人의 陳述權)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제286조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2항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법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86조 제1항). 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제도(제266조의2)의 도입과 더불어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을 다투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모두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제286조의2 제2항).

( 287 )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p> <p>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p>

개정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87조).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모두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피고인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피고인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증거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

여 이어지는 증거조사절차에서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제287조 제2항).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sup>16)</sup>

10.

가. ( 290 , 291 2)

현행법	개정법
第290條(證據調査) 證據調査는 被告人에 對한 訊問이 終了한 뒤에 하여야 한다. 但 必要한 때에는 訊問中에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16) 일본에서도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관의 편견이나 예단 배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본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의 취지증명) 증거조사의 처음에 검찰관은 증거에 의해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98조(변호인 등의 진술) ① 재판소는 검찰관이 증거조사의 첫머리에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p>도 이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p> <p>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p> <p>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p>
--	---

현행법상으로는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0조). 그러나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 이전에 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피고인을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 절차의 객체 또는 신문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칫 재판절차가 수사절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피고인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제296조의2), 증거조사는 개정법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다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290조).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증거조사의 순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형사소송규칙에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이를 먼저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제291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1조의2 제3항).

( 292 )

현 행 법	개 정 법
第292條(證據調査의 方式) ①裁判長 은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에게 證 據物을 提示하고 證據物이 書類인 때 에는 그 要旨를 告知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裁判 長은 證據된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 하게 하거나 書記로 하여금 朗讀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 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 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 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 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증거조사의 방식은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현행법 제292조 제1항). 이와 같이 증거물 제시와 증거서류의 요지 고지의 주체를 재판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재판장이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미리 그 서류를 검토해 오지 않으면 요지를 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공소장일 본주의에 반하거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전에 조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하는 현재의 실무에서 위와 같은 증거서류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정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내용을 잘 알고 있는 증거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증거조사의 방법도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제292조 제1항). 이러한 증거조사방식은 공판중심주의의 요체를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관계인의 생생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하여 형성된 심증을 가지고 평의를 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낭독하지 않으면 이를 통한 배심원들의 심증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증거서류의 낭독에 의한 증거조사 원칙은 향후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7)</sup>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제292조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증거서류의 내용을 고지하게 하거나 직접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제292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으로

17) 독일에서도 증거서류는 공판정에서 낭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일본 형사소송법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는 재판장은 그 조사를 청구한 자에게 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05조 제1항).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도 있다(제292조 제4항). 그러나 낭독이나 내용의 고지보다 열람이 더욱 효과적인 증거조사 방법이 되는 경우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2조 제5항).

( 제 292 조 2, 제 292 조 3)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p> <p>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개정법은 증거물의 조사방식에 관해서도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제292조의2 제2항). 그리고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92조의3)

( 294 )

현행법	개정법
第294條(當事者 證據申請權)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書類나 物件을 證據로 提出할 수 있고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翻譯人의 訊問을 申請할 수 있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②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기한을 일정시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sup>18)</sup> 당초 정부원안은 증거신청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초의 증거조사기일 전까지로 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과 같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거신청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증거신청기한이 지나면 증거신청

18)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Rule 12(c)]도 법원은 답변절차 또는 그 직후 당사자에 의한 공판전 신청(pretrial motions)의 시한을 정할 수 있으며, 공판전 신청의 심리기일(motion hearing)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다(개정안 제294조 제2항 내지 제4항).

그러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의 위와 같은 규정이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94조 제2항).

11. ( 296 2)

현행법	개정법
第287條(被告人訊問의 方式) ①檢事와 辯護人은 順次로 被告人에게 對하여 公訴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直接訊問할 수 있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고인신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그 후속조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현행 피고인신문제도는 피고인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라기보다는 절차의 객체 또는 신문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당초 정부원안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개정법 제296조의2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조순형 의원이 정부원안 중 “법원에 신청하여”를 삭제하고 그 대신 “순차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종 심사과정에서 위 법안이 일부 수용되어, 결국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었다(제296조의2 제1항). 당초 정부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감이 없지 않으나, 향후 실무운영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피고인신문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검사, 변호인이 신문하고,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하거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12. ( 318 4)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p>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p>
--	--

현행법상으로는 판결선고기일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형사소송규칙에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부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제267조의2에서 집중심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판결의 선고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18조의4). 개정법의 규정 해석상 훈시규정으로 보이고, 당초 정부원안에 있던 신속처리절차가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간단한 사건과 사안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선고기일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으나,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18조의4 제2항),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사건의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 원본 없이 변론종결 직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VI.

1. ( 307 )

현행법	개정법
第307條(證據裁判主義) 事實의 認定은 證據에 依하여야 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개정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07조 제2항). 이는 종래 학설과 대법원 판례<sup>19)</sup>에서 확립되어 온 원칙을 명문화한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 308 2)

현행법	개정법
<신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s)이라 함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얻은 부수적 증거에 대해 증거

19)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도 부족하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능력을 부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7항 전단과 현행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86년 보이드(Boyd)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처음 선언한 이래, 1914년의 워스(Weeks) 사건에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증거로 삼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 후 1961년의 맵(Mapp)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워스(Weeks) 사건에서 도입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연방사건뿐만 아니라 연방헌법 제14조를 통하여 주(州)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판례는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sup>20)</sup>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등<sup>21)</sup> 진술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왔다.

반면,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는 이른바 “형질·형상불변론”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sup>22)</sup> 이와는 달리 학설상으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개정법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을 선언하였다(제308조의2). 여기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규정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 여지를 두고 있는데, 향후 법원이 비진

---

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도5701 판결)

21)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2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1996. 5. 14.자 96초88 결정 등.

술증거인 증거물에 관하여 이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하겠다.

3.

현행법	개정법
<p>第312條(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①檢事が 被疑者나 被疑者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서의 原陳述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認定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이 된 被疑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被疑者였던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 的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p>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檢事 以外の 搜查機關 作成의 被疑</p>	<p>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p>

<p>者訊問調書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 日에 그 被疑者였던 被告人이나 辯護 人이 그 內容을 認定할 때에 限하여 證據로 할 수 있다.</p>	<p>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 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 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에 한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 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 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p>
---	---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

가. ( 312 1 , 2 )

(1)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당초 제정형소법 초안은 ‘검사, 수사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312조 단서<sup>23)</sup>를 추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그 후 1961. 9. 1. 형사소송법 제1차 개정 당시 제312조의 본문과 단서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면서, 제312조 제1항 단서에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를 추가하였다.

(2) 312 1

현행법 제312조 제1항 단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인정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23) “단,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현행법 제312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관하여 조서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황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른바 ‘완화요건설’)와 진정성립과 특신성 모두를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른바 ‘가중요건설’)가 있는데, 학설상으로는 완화요건설을 취하는 학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가중요건설에 학설이 대부분 일치되어 있다.<sup>24)</sup>

헌법재판소는 1995. 6. 29. 선고 93헌바45 결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외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 후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여, 가중요건설을 취하고 있다.<sup>25)</sup>

2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516쪽; 차용석·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435쪽;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781쪽;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456쪽; 임동규,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467쪽;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683쪽;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판), 박영사, 542쪽 등.

25)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이른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는 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요증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검증조서)는 그것이 위와 같은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312조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단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①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에 비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대법원 판례는 제312조 본문의 해석에 관하여 종래 이른바 ‘추정론’에 따라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추정론을 폐기하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

을 강화하고, ② 그것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점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외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성립이 진정함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는지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 하여금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26)</sup>

대법원 판례는 제312조 본문에 대하여 이른바 ‘추정론’을 취하였던 때에도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관하여는 ‘완화요건설’이 아닌 ‘가중요건설’을 취하여 왔고,<sup>27)</sup>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가중요건설을 명백하게 취하고 있다.

### (3)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 이외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법은 이 경우 예상되는 실제적 진실발견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26) “(제312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2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한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방법을 현행법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도록 하되,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가중요건설을 명시하여 조서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황은 별개의 요건임을 규정하였다.

한편,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제312조 제1항)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제312조 제2항)로 나누어 규정하기로 하였다. 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때에는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하였다(제312조 제2항). 개정법 제312조 제2항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이 전제로 됨은 물론이다.

#### (4)

#####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현행법상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개정법에서 규정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방법(제244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44조의3),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등 개정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

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원진술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정법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점에서 개정법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당초 정부원안은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정부원안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방법 중 “기타 객관적 방법”에는 개정법 제316조에 규정된 조사자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 보았으나, “기타 객관적 방법”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은 개정법 제244조의2에 신설된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8)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원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한국형사법학회 등 학계에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당시 학계에서 보내 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증거법칙에 관한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악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및 판례의 입장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으로서 개정의 의미를 전혀 찾기 어렵다.” (한국형사법학회)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녹화물을 증거의 세계로 적극 투입하게 되면 공판심리의 대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 (한국형사정책학회)

### ③ 특신상황이 인정될 것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영미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과 같은 의미로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sup>29)</sup>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고,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특신상태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sup>30)</sup> 그리고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이나 자백은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근거를 둔 것으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그 강약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sup>31)</sup>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고 되어 있었으나, 범사위 심의 과정에서 특신상황의 예시인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등’을 삭제하였다.

2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등 다수.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3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개정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12 4 )

(1)

현행법상으로는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현행법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원진술자가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sup>32)</sup>

개정법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외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3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265 판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에도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한편, 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로 보아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행 판례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

(2)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우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앞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다.

②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

조서의 기재 내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없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서도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원안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221조

제1항).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증인이 구체적 사실을 진술함이 없이 바로 조서의 진정성립만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경험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험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부분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다. 다만,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신문권의 기회 부여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증인신문은 조서의 진정성립 확인 중심이 아니라 경험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개정법률이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도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1항).

### ③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될 것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sup>33)</sup> 이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3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크로포드(Crawford)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였다.<sup>34)</sup>

개정법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반대신문권의 기회 보장이 그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됨을 명시하였다. 다만,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반대신문을 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

#### ④ 특신상황이 인정될 것

개정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34) ※ 크로포드 사건[Crawford vs. Washington, 124 S. Ct. 1354 (2004)]

피고인측은 크로포드 처(妻)의 증언을 담은 경찰 조서가 특별한 신용성의 보장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피고인의 대질신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측은 피고인과 처의 증언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므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크로포드 처의 증언)도 특별한 신용성의 보장이 있고, 신용성의 보장이 있으면 전문법칙에도 또 대질신문권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대질신문권 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거의 신용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실체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이다. 다시 말해서, 대질신문권 조항이 법원에게 요구하는 바는 증거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특정한 방법으로, 즉, 반대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른바 ‘특신상황’에 관해서는 앞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다.

( 312 5 )

개정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제312조 제5항). 개정법 제312조 제5항과 제313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학설·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 312 6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검증조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는데, 검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sup>35)</sup>

( 314 )

현 행 법	개 정 법
第314條(證據能力에 對한 例外) 第312條 또는 第313條의 境遇에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陳述을 要할 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 其他 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調書 其他 書類를 證據로 할 수 있다. 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35)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만, 그 調書 또는 書類는 그 陳述 또는 作成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하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한다.	증명된  때에 限한다.

현행법 제314조는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12조 및 제313조의 서면에 대하여 영미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에서 인정되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전문법칙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 중 “기타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sup>36)</sup> 진술을 요할 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집행도 안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sup>37)</sup>하는 등 비교적 “기타 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이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38)</sup> 특히

3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31 판결.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동법 제312조의 조서나 동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을 형사소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요할 자가 출정증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

38)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39)</sup>

개정법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 아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종래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엄격히 규정하였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

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39)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용어만을 “소재불명”으로 수정하였다.

4. ( , 316 )

현행법	개정법
<p>第316條(傳聞의 陳述) ①被告人이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 의 陳述이 被告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p> <p>②被告人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 아닌 他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原陳述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 其他 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p>	<p>第316條(傳聞의 陳述)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하여졌음이 증명된-----</p> <p>-----.</p> <p>②-----</p> <p>-----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p> <p>-----행하여졌음이 증명된-----</p> <p>-----.</p>

현행법 제316조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검사가 조사경찰관에 대하여 같

은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개정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sup>40)</sup>

검사에게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져 왔으나,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개정법은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정부원안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개정법 제312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개정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한 조사자의 증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향후 법원의 실무운영과 해석에 맡겨져 있음과 마찬가지로, 개정법 제316조 제1항이 규정한 조사자 증언의 허용범위와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에 관해서는 향후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5. ( 318 2)**

현 행 법	개 정 법
第318條의2(證明力을 다투기 위한 證據) 第312條 乃至 第3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證據로 할 수 없는 書類나 陳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

40)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등.



<p>述이라도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서의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の 陳述의 證明力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 를 證據로 할 수 있다.</p>	<p>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의 피고 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 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 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 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이다. 탄핵증거는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법관의 심증형성이 증거능력이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증거능력이 없는 탄핵증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개정법에서도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영상녹화물인 탄핵증거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8조의2 제2항).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무분별하게 법정에 제출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가 퇴색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모두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설령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이는 “기억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억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제출받아 피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sup>41)</sup>

탄핵증거로 제출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이 없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탄핵증거의 대상이 되는 영상녹화물은 개정법 제244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

4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3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VII.

1. ( 163 2, 221 3 , 276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p>

	<p>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li> <li>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의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사건에서 노인·아동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제2항,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항).

개정법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등으로 제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종래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었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일반 범죄의 경우에까지 확장하였다.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163조의2 제2항).

다만,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만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였다(제163조의 제3항).

이러한 신뢰관계자의 동석 규정은 법원의 증인신문뿐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21조 제3항).

한편, 개정법은 이와는 별도로 ①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 특칙을 신설하였다(제276조의2).

2. ( 165 2)

현행법	개정법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p> <p>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p> <p>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p>

	<p>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 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범죄피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심리적,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일본<sup>42)</sup>이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도입하였다.

42)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3(증인의 차폐) ① 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 그 증인 사이에 일방이 또는 상호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출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등) 재판소는 다음에 내세우는 자를 증인으로서 신문할 경우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관 및 소송 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 재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이들이 재정하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한한다.)에 그 증인을 재정하게 하여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상대방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법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죄<sup>43)</sup>의 피해자
  -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죄<sup>44)</sup>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 ③ 그 밖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차폐시설 등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할 경우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반대신문권 자체는 보장된다.

**3. ( 259 2)**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43)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4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5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6조), 알선영업 행위 등(제7조),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8조), 청소년 매매행위(제9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10조)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는 규정은 없었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지침」에 따라 피해자 등이 원할 경우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사실 등을 통지해 왔다.<sup>45)</sup>

개정법은 위 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내용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겨,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59조의2).

**4. ( 294 2, 294 3)**

가. ( 294 2)

현 행 법	개 정 법
第294條의2(被害者의 陳述權) ①法院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
은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이 있	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

45) 독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형사재판절차의 경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제406조의d 제1항),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변호인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항).

<p>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被害者가 아닌 者가 申請한 경우 2. 申請人이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公判節次 또는 搜查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피해자등----- ---공판절차----- ----- 3. 피해자등----- ----- -----</p>
<p>②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로 인한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件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p>	<p>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의 數가 多數인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신청인이 여러 명 인 경우에는 진술할 ----- -----.</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p>	<p>④----- 출</p>

喚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	-----
한 것으로 본다.	-----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현행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제1항),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되(제2항), 피해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현행법 제294조의2가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진술자의 확장, 배제사유의 축소, 진술내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개정법은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신청 주체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제294조의2 제1항). 그리고 피해자 진술권의 배제사유에서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현행법보다 피해자 진술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sup>46)</sup>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46)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고 진술권 형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되(제1항), 피해자의 진술이나 서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제9항). 다만 피해자는 검사에게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법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94조의2 제3항).

( 294 3)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p>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p>
	<p>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p>

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독일의 경우에는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 진술이 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거나 증인의 출석 불가능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외에서 증언할 수 있고, 이 때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a).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방식으로는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처럼 진술권 형식으로 규정하되, 법관 및 소송관계인의 질문절차를 두어 그 내용을 검증하고, 그 진술이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견해(소수의견)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 피해자가 위증 부담이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도 없이 사실상 강력한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지므로, 증인신문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의견)로 나뉘었다. 개정법은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 형식으로 보장한 것이다.

	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	-----------------------------------

헌법 제109조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헌법 제109조의 규정과 동일하며,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하되,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의 비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sup>47)</sup>

개정법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294조의3),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판공개 원칙’의 상충을 검사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비공개 방식으로 절충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5. ( 294 4)

현 행 법	개 정 법
<신 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p>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p> <p>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고, 단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개정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권을 인정하되,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4조의4 제1항, 제3항).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권자로 된다(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 또는 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94조의4 제2항). 재판장이 피해자 등에게 소송기록의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도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94조의4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피해자 등은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294조의4 제5항).



한편, 개정법은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의 피해자 등에 대한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허부 결정 또는 사용목적에 관한 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94조의4 제6항).

VIII.

1. ( 59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li> <li>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li> </ol>

	<p>경우</p> <p>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p>
--	--

	<p>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제418조 내지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p>
--	--

현행법상으로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관한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3조와 형사확정소송기록법에서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2 제1항).

공개신청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9조의2 제2항).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②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sup>48)</sup>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법 제418조, 제419조의 준항고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의2 제7항).

48) 당초 정부원안에는 열람·등사의 제한사유로 개정법 제59조의2 제2항 제6호(영업비밀의 침해 우려), 제7호(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는 없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6호 및 제7호가 추가되었다.

## 2.

가.

( 194 2)

현행법	개정법
<p>&lt;신설&gt;</p>	<p>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p> <p>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li> <li>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li> <li>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li> <li>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한 경우</li> </ol>

현행 형사보상법은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만 인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 형사소송법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188조의2), 형사소송법에 1개의 장(章)을 두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법은 현행법의 위와 같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94조의2).

다만, 비용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요건으로서,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194조의2 제2항) 등 네 가지 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 194 3)

현행법	개정법
<신설>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94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94조의3 제2항). 법원의 비용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4조의3 제3항).

( 194 4, 194 5)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 설&gt;</p>	<p>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 그 밖에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p>



	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개정법은 제194조의4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상의 범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즉,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94조의4 제1항). 현행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②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③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로 규정하고(제2조), 증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3조 내지 제5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제2항),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

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따라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으로써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변호인의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 그 밖에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194조의4 제2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등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대법원 재판예규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실무운영이 기대된다.

한편,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개정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예에 따른다(제194조의5).

### 3. ( 247 , 248 )

현행법	개정법
第247條(起訴便宜主義와 公訴不可分) ①檢事は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犯罪事實의 一部에 對한 公訴는 그 效力이 全部에 미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48條(公訴效力의 人的範圍) 公訴는 檢事가 被告人으로 指定한 以外の 다른 사람에게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현행법 제247조 제2항에 있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을 개정법 제248조 제2항으로 옮김으로써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일 뿐, 그 내용에서는 현행법과 개정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가. ( 348 )

현 행 법	개 정 법
第348條(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①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할 때까지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境遇에 被告人의 拘禁을 要하는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但, 第70條의 要件이 具備된 때에 限한다.	第348條(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①-----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허부의 결정을 할 때까지 반드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제458조 제1항). 이에 따라 특히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중인 자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소재불명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소권회복청구시 재판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 390 2 )

현 행 법	개 정 법
第390條(書面審理에 의한 判決)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 수 있다.  <신 설>	第390條(書面審理에 의한 判決)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은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상고법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참고인의 구두변론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482 3 )

현 행 법	개 정 법
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 수 등의 산입) ①上訴提起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1. (생 략) 2.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 수 등의 산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檢사가 아닌 자----- -----

破棄된 때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の 1日 또는 罰金이나 料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개정법은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82조제3항). 원래 상소기각 결정시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은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결선고 후 상소제기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sup>49)</sup>의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5.

현행	개정법
第25條(法院書記官等에 對한 除斥, 忌避, 回避) ①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法院의 書記官, 書記와 通譯人에  준용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

49)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가7 결정.

<p>한다.</p>	<p>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p>
<p>②前項의 書記官, 書記와 通譯人에 대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規定은 忌避당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p>	<p>②-----<u>법원사무관등과</u>----- ----- -----</p>
<p>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翻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p>	<p>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 -----<u>법원사무관</u> <u>등이</u>-----</p>
<p>第50條(各種 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의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但, 公判期日外에 法院이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法官과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第50條(各種 調書의 記載要件) ----- ----- -----<u>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u> <u>또는 서명</u>----- ----- -----<u>법원사무관</u> <u>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u>-----</p>
<p>第51條(公判調書의 記載要件) ①公判期日의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參與</p>	<p>第51條(公判調書의 記載要件) ①----- -----</p>

<p>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公判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p>	<p>---<u>법원사무관등이</u>----- -----</p>
<p>②公判調書에는 다음 事項 其他 모든 訴訟節次를 記載하여야 한다.</p>	<p>②-----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法官, 檢事, 書記官 또는 書記의 官職, 姓名</p>	<p>2. -----<u>법원사무관등</u>----- -----</p>
<p>3. ~ 14. (생 략)</p>	<p>3. ~ 14. (현행과 같음)</p>
<p>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等) ①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等) ①----- -----<u>법원사무관등이 기명</u> <u>날인 또는 서명</u>하여야-----</p>
<p>②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②-----<u>기명날인 또는 서명</u>----- -----<u>기명</u> <u>날인 또는 서명</u>-----<u>기명날인</u> <u>또는 서명</u>-----<u>법원사무관</u> <u>등이</u>-----<u>기명날인 또는</u> <u>서명</u>-----.</p>
<p>③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③<u>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u> <u>명할</u>-----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p>
<p>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年月日과 所屬公</p>	<p>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 -----</p>





<p>⑤ 피고인이 矯導官吏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⑤-----교도관으로부터----- ----- -----.</p>
<p>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생략) ②前項 但行의 境遇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書記官 또는 書記는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p>	<p>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법원사무관등은----- -----사법경찰관 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 ----- -----</p>
<p>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矯導官吏가 執行한다.</p>	<p>③----- ----- -----교도관이-----</p>
<p>第115條 (令狀의 執行) ①押收·搜索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p>	<p>第115條 (令狀의 執行) ①----- ----- ----- -----법원사무관등-----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第117條 (執行의 補助)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押收·搜索令狀의</p>	<p>第117條 (執行의 補助) 법원사무관등은-----</p>

<p>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求할 수 있다.</p>	<p>----- -----</p>
<p>第137條 (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가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p>	<p>第137條 (拘束令狀執行과 搜索) --- ----- -----<u>법원사무관등이</u>----- ----- ----- -----</p>
<p>第138條 (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의 搜索에 準用한다.</p>	<p>第138條 (準用規定) ----- ----- ----- -----<u>법원사무관등</u>----- -----</p>
<p>第157條(宣誓의 方式) ①·② (생략)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p>	<p>第157條(宣誓의 方式)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 -----<u>법원사무관등이</u>----- -----</p>

<p>④ (생략)</p> <p>제277조의2 (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①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矯導官吏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 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公判절차) ①----- ----- -----<u>교도관</u>----- ----- -----.</p>
<p>② (생략)</p> <p>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p> <p>① (생략)</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법원사무관등으로</u>----- -----.</p>
<p>第468條(死刑執行調書)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第468條(死刑執行調書)----- ----- -----<u>기명날인 또는 서명</u>-----</p>

개정법은 현행법상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 로 되어 있던 것을 법원공무원규칙이 정한 직급명칭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로 수정하였다(제25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61조, 제64조, 제81조, 제115조, 제117조, 제137조, 제138조, 제157조, 제297조).

또한 현행법상 “교도관리” 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이 정한 직급명칭인 “교도관” 으로 수정하였다(제76조, 제81조, 제277조의2).

그리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서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개정법은 종래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한 각종 서류에 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50조, 제53조, 제57조, 제158조, 제468조).

6. ( 29 )

현 행 법	개 정 법
第29條(輔助人) ① (생 략)	第29條(輔助人) ① (현행과 같음)
② 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 -----심급별로 그 취지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법은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도록 규

정하였다.

## 7. ( 35 )

현행법	개정법
第35條(書類, 證據物의 閱覽, 謄寫) 辯護人은 訴訟繫屬中の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현행법 제35조는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자를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30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 법정대리인, 보조인 등에게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던 공판조서의 정리시한을 삭제하고, “공판기일 후 신속히” 작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제54조 제1항).

또한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4조 제2항).

한편, 종래에는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제54조 제3항, 제4항).

9. ( 56 2)

현행법	개정법
第56條의2(公判廷에서의 速記·錄取)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피고인
①法院은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被告人, 證人 또는 기타의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者에 대한 訊問의 전부 또는 일부를 速記士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사용하여 錄取하여야 한다.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 의한 速記나 錄取에 費用을 요하는 때에는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는 法院이 정하는  금액을 豫納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에 의하여 速記나 錄取를 한 때에는 申請人은 費用額을 부담하고 速記錄 또는 錄音帶의 謄本 또는 抄本을 請求할 수 있다.	③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이외에 영상녹화를 추가하였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6조의2 제1항). 속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져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속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법 제40조 제1항).

한편,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의2 제2항), 그 보관방법, 보관시한 등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이 없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정비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0. ( 130 )

현행법	개정법
<p>第130條(押收物의保管과廢棄) ①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第132條(押收物의 代價保管) 沒收하여야 할 押收物로서 滅失, 破損 또는 腐敗의 念慮가 있거나 保管하기 不便한 境遇에는 이를 賣却하여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p>	<p>第130條(押收物의保管과廢棄)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p> <p>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현행법상 압수물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폐기할 수 있는 경

우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으나, 유사석유제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의 압수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또는 동식물검역소의 검역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수축산물인 압수물의 경우, 압수물은 중국적으로 몰수될 수밖에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재판확정시까지 보관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예산과 인력이 크게 낭비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압수물은 판매·유통도 할 수 없으므로 사건종결전 대가보관도 불가능하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도록 사건 종결전 압수물 폐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제130조).

한편, 현행법상 압수물의 환가보관 사유는 몰수대상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현저한 가치감소가 염려되는 경우 또는 환부 받을 자가 불상이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압수물을 환가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환가보관 대상을 확대하였다(제132조 제2항). 또한 환가보관은 일정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환가보관의 사유 중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를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였다(제132조 제1항).

## 11. ( 417 )

현행법	개정법
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處分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第417條(同前) ----- ----- <u>처분과</u>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	에 關한  처분-----

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處分の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 ----- -----
--	-------------------------

개정법에서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관한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제417조).

**12. ( 471 )**

현 행 법	개 정 법
第471條(同前) ① (생 략) ②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高等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 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471條(同前) ① (현행과 같음) ②-----고등 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 장-----

종래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간소화하여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으면 되도록 규정하였다(제471조 제2항).

**13. ( 477 )**

현 행 법	개 정 법
第477條(財産刑等の執行) ① ~ ③ (생 략) <신 설>	第477條(財産刑等の執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 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

<신 설>	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법은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의 집행에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77조 제4항). 이에 따라 벌과금 집행담당 공무원은 개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채납처분절차 중 1개를 택 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한편, 검사는 재산형 집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제477조 제5항, 제199조 제2항).









•

현행	개정법
<p>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행)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p> <p>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p> <p>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p>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 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p>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법의 죄</p> <p>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p> <p>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li> <li>2. 관할위반을 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li> </ol> <p>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li> <li>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li> </ol> <p>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p> <p>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2008.1.1부터 시행)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

<p>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p> <p>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lt;개정 1995.12.29&gt;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

<p>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lt;신설 1995.12.29&gt;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p>	
<p>제25조(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p>	<p>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과-----</p>
<p>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刑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p>	<p>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p>
<p>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p>	

<p>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p> <p>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p>	
<p>제29조(보조인)</p> <p>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2008.1.1.부터 시행)</p> <p>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u>서면으로</u>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9조(보조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심급별로 그 취지를</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p> <p>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5.3.31&gt;(※2008.1.1.시행)</p> <p>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p> <p>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p> <p>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p>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u>변호인은</u>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p> <p>① <u>피고인과 변호인은</u>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p> <p>② <u>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u></p>
<p>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7조 (판결, 결정, 명령)</p> <p>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p> <p>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p> <p>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p>	

<p>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p> <p>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p> <p>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lt;신설 1995.12.29&gt;</p> <p>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lt;개정 1961.9.1&gt;</p> <p>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p> <p>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p>	
<p>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p> <p>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p>	<p>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p> <p>① ----- ----- ----- -----<u>법원사무관등이</u>-----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또는 번역인의 진술</p> <p>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p> <p>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p> <p>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p> <p>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9조 (검증등의 조서)</p> <p>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p> <p>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p> <p>전 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p> <p>-----</p> <p>-----</p> <p>-----<u>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u>-----</p> <p>-----</p> <p>-----</p> <p>-----<u>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u>-----</p>

<p>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p> <p>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li> <li>2.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li> <li>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li> <li>4. 피고인의 출석여부</li> <li>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li> <li>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li> <li>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li> <li>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li> <li>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li> <li>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li> <li>11. 변론의 요지</li> <li>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li> <li>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li> <li>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li> </ol> <p>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lt;개정 1995. 12.</p>	<p>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p> <p>①-----          ---<u>법원사무관등</u>-----          -----.</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법원사무관등</u>-----</li> <li>3. ~ 14. (현행과 같음)</li> </ol>
--	---

<p>29&gt;</p>	
<p>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②----기명날인 또는 서명-----기명날인 또는 서명-----기명날인 또는 서명-----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기명날인 또는 서명-----.</p>
<p>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54조(공판조서의정리등)                  ①-----신속히-----                  ② 다음 회-----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p>	

<p>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p> <p>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p>	
<p>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p> <p>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7조(공무원의 서류)</p> <p>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57조(공무원의 서류)</p> <p>① ----- ----- -----기명날인 또는 서명-----.</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p>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번개하지 못한다.                  ②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p> <p>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li> <li>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li> </ol>



	<p>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p>
--	---

<p>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p> <p>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p> <p>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p> <p>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p> <p>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u>서기관 또는 서기는</u>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p> <p>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p> <p>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데도 전항과 같다.</p>	<p>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p> <p>①----- ----- -----<u>법원사무관등</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p> <p>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p>	<p>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p> <p>① (현행과 같음)</p>

<p>수 있다.</p> <p>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개정 1961.9.1&gt;</p> <p>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lt;개정 1961.9.1&gt;</p>	<p>②-----<u>법원사무관등이</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 (民事訴訟法の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u>民事訴訟法</u>을 준용한다.</p> <p>제66조 (기간의 계산)</p> <p>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p> <p>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p> <p>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p> <p>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 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65조(<u>민사소송법의준용</u>) ----- ----- <u>민사소송법</u> -----.</p>

<p>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p> <p>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p>	
<p>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li> <li>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li> <li>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②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lt;개정 1973.1.25, 1995.12.29&gt;</p>	<p>제70조(구속의 사유)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p>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u>교도관리</u>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lt;개정 1963.12.13&gt;</p> <p>⑤피고인이 <u>교도관리로부터</u>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lt;개정 1963.12.13&gt;</p> <p>제77조 (구속의 촉탁)</p> <p>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p> <p>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p> <p>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p> <p>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p> <p>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입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입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p> <p>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p>	<p>④----- <u>교도관</u> ----- -----.</p> <p>⑤----- <u>교도관으로부터</u> ----- -----.</p>
---	---

<p>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p>	<p>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법원사무관등은-----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                  -----.                  ③ -----                  -----                  -----교도관이-----.</p>
<p>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p> <p>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lt;개정 2004.1.20&gt;)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p>	

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p>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p>	
<p>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p>	<p>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p>
<p>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lt;개정 1973.12.20, 1995.1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li> <li>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li> <li>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li> <li>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ol>	

<p>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u>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u>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lt;개정 1995.12.29&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99조(보석의 조건)  <u>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u></p>	<p>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li> <li>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li> <li>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li> </ol>

	<p><u>수인할 것</u></p> <p>4. <u>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u></p> <p>5. <u>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을 제출할 것</u></p> <p>6. <u>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u></p> <p>7. <u>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u></p> <p>8. <u>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u></p> <p>9. <u>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u></p>
<p>제98조 (보석과 보증금)</p> <p>① <u>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성질, 죄상</li> <li>2. 증거의 증명력</li> <li>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li> </ol> <p>② <u>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u></p>	<p>제99조(보석조건에의 결정 시 고려사항)</p> <p>① <u>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li> <li>2. 증거의 증명력</li> <li>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li> <li>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li> </ol> <p>② <u>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u></p>
<p>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p> <p>① <u>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u></p>	<p>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p> <p>① <u>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u></p>

<p>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u>피고인 이외의 자의</u>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피고인외의 자가</u>제출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p> <p>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p> <p>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p> <p>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보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p> <p>①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망한 때</li> <li>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li> <li>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li> </ol> <p>②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p>	<p>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등)</p> <p>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망한 때</li> <li>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li> <li>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li> </ol> <p>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u>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u>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p>
<p>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p>	<p><u>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u> -----                  -----                  -----                  ----<u>보증금 또는 담보를</u> -----                  -----</p>
	<p><u>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u>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p>
<p>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p>	
<p>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p>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p>수 없다.</p> <p>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p> <p>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p> <p>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lt;개정 1980.12.18, 1997.12.13&gt;</p> <p>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14조 (영장의 방식)</p> <p>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p>	
--	--

<p>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p>	
<p>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u>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u>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p> <p>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                  -----                  -----                  -----<u>법원사무관등</u>-----                  ② (현행과 같음)</p>
<p>제117조 (집행의 보조) <u>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u>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p> <p>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p> <p>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p>	<p>제117조 (집행의 보조) <u>법원사무관등은</u>                  -----                  -----                  -----</p>

<p>수 있다.</p> <p>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p> <p>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p>	
--	--

<p>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p> <p>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p> <p>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p> <p>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p> <p>①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u></p>
<p>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p>	

<p>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u>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u>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u>  <u>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u></p>
<p>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p> <p>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p> <p>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                  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                  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                  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                  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                  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                  할 수 있다.</p> <p>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                  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p> <p>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기의 수색에 준용한다.</p> <p>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                  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p>	<p>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수색)-----                  -----                  -----<u>법원사무관등이</u>-----                  -----                  -----                  -----                  -----.</p> <p>제138조(준용규정)-----                  -----                  -----<u>법원</u>  <u>사무관등</u>-----.</p>

<p>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p> <p>제143조 (시각의 제한)</p> <p>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p> <p>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p>	
---	--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008.1.1.부터 시행)
-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150조의2(증인의 소환)</u>                  ①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전화·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p>
<p><u>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u></p> <p>①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p>	<p><u>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u></p> <p>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p> <p>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p> <p>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p> <p>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p> <p>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p>

<p>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u>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  <u>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p> <p>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p> <p>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p> <p>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p> <p>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57조 (선서의 방식)</p> <p>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p> <p>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u>서기관 또는 서기</u>가 이를 대행한다.</p> <p>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p>	<p>제157조(선서의 방식)</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          -----<u>법원</u>  <u>사무관등이</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p> <p>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6세미만의 자</li> <li>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li> </ol> <p>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lt;개정 1973.1.25, 1995.12.29&gt;</li> <li>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li> </ol> <p>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li> <li>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li> <li>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li> <li>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t;개정 1987.11.28&gt;</li> <li>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li> </ol>	
--	--

<p>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lt;1961.9.1&gt;</p> <p>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p>

	<p>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4조 (신문의 청구)</p> <p>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③삭제 &lt;1961.9.1&gt;</p> <p>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p> <p>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p> <p>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p>

	<p>자</p> <p>3. <u>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p> <p>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p> <p>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p> <p>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p> <p>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p> <p>②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p> <p>③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p> <p>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70조 (선서)</p> <p>①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p>	

<p>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p> <p>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p> <p>제171조 (감정보고)</p> <p>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172조 (법원외의 감정)</p> <p>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lt;개정 1973.1.25&gt;</p> <p>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lt;신설 1973.1.25&gt;</p> <p>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lt;신설 1973.1.25&gt;</p> <p>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p>	
--	--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신설 1973.1.25>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



<p>거품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p> <p>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77조 (준용규정) 전항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p> <p>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p>	
---	--

<p>다.</p> <p>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p> <p>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p>	
<p>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p> <p>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p>
<p>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p> <p>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p> <p>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p>	

<p>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5.12.29&gt;</p> <p>②피고인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p> <p>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p> <p>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p> <p>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p> <p>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p>	
--	--

<p>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인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p> <p>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p>

	<p>것으로 인정된 경우</p> <p>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p> <p>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p> <p>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p>
<p>〈신 설〉</p>	<p>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p> <p>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p> <p>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4조의5(준용규정)</u>  <u>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u></p>
<p>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p>	
<p>제198조 (주의사항)          〈<u>신 설</u>〉</p> <p>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98조 (준수사항)          ①<u>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u>          ②<u>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p>	

<p>&lt;개정 1995.12.29&gt;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p> <p>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lt;개정 1961.9.1&gt;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p>	<p>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 ~ ⑤ (현행법과 동일)</p>

<p>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p> <p>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0조의3 (긴급체포)</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p>	<p>제200조의3 (긴급체포)</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p>





<p>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li> <li>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li> <li>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li> <li>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li> </ol> <p>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p> <p>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00조의5(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1항 단</p>	<p>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p>

<p>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p>	<p>및제102조제2항단서----- ----- ----- -----.</p>
<p>제201조 (구속)</p> <p>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lt;개정 1980.12.18, 1995.12.29&gt;</p> <p>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2.18&gt;</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신설 1995.12.29&gt;</p> <p>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lt;개정 1980.12.18&gt;</p> <p>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2.18&gt;</p>	
<p>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p>	<p>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p>

<p>등</p> <p>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2008.1.1.부터 시행)</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p> <p>④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p> <p>⑤ 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p>	<p>문)</p> <p>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p>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p> <p>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p>
---	--

<p>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⑦ 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⑧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⑨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p> <p>⑩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p> <p>⑪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lt;개정 1997.12.13, 2006.7.19&gt;</p>	<p>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p>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⑧ (현행 제9항과 같음)</p> <p>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p> <p>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제51조·제53조·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p>	

<p>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 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lt;개정 1997.12.13&gt;</p> <p>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p> <p>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p> <p>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6조 삭제 &lt;1995.12.29&gt;</p> <p>제207조 삭제 &lt;1995.12.29&gt;</p>	<p>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1조의2제 2항----- ----- ----- ----- -----</p>

<p>제208조 (재구속의 제한)</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p> <p>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p>	
<p>제209조 (준용규정)</p> <p><u>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u></p>	<p>제209조(준용규정)</p> <p><u>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u></p>
<p>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lt;개정 1961.9.1, 1995.12.29&gt;</p> <p>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p> <p>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p> <p>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p>	

<p>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흠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p> <p>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이 있는 때</p> <p>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p> <p>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p> <p>제212조의2 삭제 &lt;1987.11.28&gt;</p> <p>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p> <p>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삭제 &lt;1987.11.28&gt;</p>	
<p>제213조의2(준용규정)</p> <p>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13조의2(준용규정)</p> <p>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제200조의5----- ----- -----.</p>
<p>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lt;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gt;</p>	



<p>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p> <p>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8.1.1.부터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②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제청구한 때</li> <li>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li> </ol> <p>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p> <p>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및 2. (현행과 같음)</li> </ol> <p>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 ----- -----제4항 ----- ----- -----.</p>
--	---

<p>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⑥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⑦ 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⑧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⑪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p>	<p>1·2.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 ----- ----- -----</p> <p>⑦ 제99조 및 제100조는 제5항에 따라----- ----- -----</p> <p>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⑩ (현행 제9항과 같음)</p> <p>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p>
--	---

<p>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⑭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p> <p>①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p>②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망한 때</li> <li>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li> <li>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li> <li>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li> </ol>	<p>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p> <p>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p>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ol>
<p>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p> <p>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한 때</li> <li>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li> </ol>	<p>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p> <p>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한 때</li> <li>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li> </ol>

<p>② 법원은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lt;개정 1980.12.18&gt;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lt;개정 1980.12.18&gt;</p>	
<p>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p>	



<p>제220조 (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p>	
<p>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u>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u>  <u>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u>  <u>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u></p>
<p>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u>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u>  <u>③ 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u>  <u>⑤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u></p>	<p>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u>① (현행과 같음)</u></p> <p><u>② &lt;삭 제&gt;</u></p> <p><u>③</u>  <u>제1항-----</u>  <u>-----.</u></p> <p><u>④ 제1항-----</u>  <u>-----.</u></p> <p><u>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u></p>

<p><u>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u></p> <p>⑥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u>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⑥ -----제1항----- ----- -----.</p>
<p>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p> <p>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2.18&gt;</p> <p>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lt;개정 1980.12.18&gt;</p> <p>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p> <p>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2.18&gt;</p> <p>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2.18&gt;</p> <p>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lt;개정 1980.12.18&gt;</p> <p>제222조 (변사자의 검사)</p> <p>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사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lt;신설 1961.9.1&gt;</p> <p>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lt;신설 1961.9.1&gt;</p> <p>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p> <p>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p> <p>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p> <p>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p> <p>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p> <p>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p> <p>제227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p> <p>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29조 (배우자의 고소)</p> <p>①刑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p>	<p>제229조 (배우자의 고소)</p> <p>①형법----- ----- -----.</p>



<p>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刑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p> <p>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p> <p>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p> <p>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p>	<p>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                  -----                  -----.</p>

<p>야 한다.</p> <p>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p> <p>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p> <p>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p> <p>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39조 (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p>	
<p>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41조(피의자신문)----- ----- ----,등록기준지,----- ----- -----.</p>
<p>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p>	

<p>를 주어야 한다.</p>	
<p>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u>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u>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u>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u>법원사무관등을</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u>  <u>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u>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u>  <u>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u> <u>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u>  <u>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u>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u>  <u>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u>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u>① (현행과 같음)</u></p>

<p>②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p>	<p>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p> <p>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p> <p>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p> <p>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p>

	<p>할 수 있다는 것</p> <p>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p> <p>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p> <p>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p> <p>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p> <p>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p>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p>

	<p>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p>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p> <p>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p> <p>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p>	
<p>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p> <p>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p>	<p>제247조(기소편의주의)</p> <p>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lt;제2항 삭제&gt;</p>
<p>제248조(공소효력의 인적 범위)</p> <p>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p> <p>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p>
<p>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p> <p>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lt;개정 1973.1.25&gt;</p> <p>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p> <p>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p> <p>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p>	

<p>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p> <p>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p> <p>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p> <p>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p> <p>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lt;신설 1961.9.1&gt;</p> <p>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刑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2조 (시효의 기산점)</p> <p>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p> <p>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p> <p>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p> <p>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lt;개정 1961.9.1&gt;</p> <p>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p>	<p>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 ----- ----- -----.</p>

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죄명
- 3. 공소사실
-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6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



<p>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lt;개정 1987. 11.28&gt;</p> <p>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p>

	<p>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0조 (재정신청)  <u>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u>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60조(재정신청)  <u>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li> <li>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li> <li>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li> </ol> <p><u>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u>  <u>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p> <p>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p> <p>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p>	<p>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p> <p>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p> <p>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p>
<p>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p>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p>	<p>제262조(심리와 결정 등)</p> <p>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p>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p> <p>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p>	<p>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p> <p>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제262조의3(비용부담 등)</p> <p>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p>

<p>제262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p>
<p>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lt;개정 1980.12.18&gt;</p> <p>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법원의 심판에 부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현행과 같음)                  ②-----제262조제2항-----                  -----                  ③(현행과 같음)</p> <p>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u>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p> <p><u>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u> <u>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u></p> <p><u>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u></p> <p><u>④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u></p> <p><u>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u></p> <p>제266조 (공소장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u>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u></p> <p><u>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u></p> <p><u>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u>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u></p>

	<p>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li> <li>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li> <li>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li> <li>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li> </ol> <p>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p> <p>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p>
--	---

	<p>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p>
<p>〈신 설〉</p>	<p>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피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p>



<p>&lt;신 설&gt;</p>	<p>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p>

	<p>다.</p> <p>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p> <p>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p> <p>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p> <p>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일에 출석할 수 있다.</p> <p>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p> <p>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li> <li>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li> <li>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li> <li>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li> <li>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li> <li>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li> <li>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li> </ol>

	<p>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p> <p>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p> <p>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p> <p>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p> <p>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p> <p>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p> <p>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p> <p>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p> <p>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p> <p>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p> <p>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p>

	<p><u>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u>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p>
<p>〈<u>신 설</u>〉</p>	<p>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u></li> <li>2. <u>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u></li> <li>3. <u>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u></li> </ol>
<p>〈<u>신 설</u>〉</p>	<p>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u></li> </ol>

	<p>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p> <p>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신 설>	<p>제266조의14(준용규정)</p> <p>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p>
<신 설>	<p>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p> <p>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신 설>	<p>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p> <p>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p> <p>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p> <p>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p> <p>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67조의2(집중심리)</u>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p> <p>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p> <p>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p>	

<p>출하여야 한다.</p> <p>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lt;개정 1961.9.1&gt;</p>	
<p>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p>	<p>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현행과 같음)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p>
<p>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p>	

<p>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p>
<p>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7조 (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p>





<p>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282조 (필요적 변호 &lt;개정 2006.7.19&gt;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lt;개정 2006.7.19&gt;</p> <p>제283조 (국선변호인 &lt;개정 2006.7.19&gt;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7.19&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u>본적</u>,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p>	<p>제284조(인정신문)-----          -----,등록기준지,-----</p>

<p>피고인입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 -----.</p>
<p>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신 설〉</p>	<p>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p>
<p>제288조 삭제 &lt;1961.9.1&gt;</p>	
<p>제289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p>	<p>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p>
<p>제291조 (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p>

	<p>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①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p>	<p>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p>

	<p>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p>
<p>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피해자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p>	<p>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lt;삭 제&gt;          2. 피해자등-----          -----공판절차-----          -----          3.피해자등-----          -----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피해자등을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p>

<p><u>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u>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③-----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진술할-----.</p> <p>④-----출석통 지를----- -----.</p>
<p><u>&lt;신 설&gt;</u></p>	<p><u>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u></p> <p>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p> <p>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u>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u></p> <p>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p> <p>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lt;개정 1987.11.28&gt;</p> <p>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p> <p>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287조(피고인 신문)</p> <p>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p> <p>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296조의2(피고인신문)</p> <p>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p>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p>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p> <p>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p>	
---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u>신 설</u>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	

<p>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lt;개정 1973.1.25, 1995.12.29&gt;</p>	
<p>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하 신설&gt;</p>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p>

	<p>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3조 (진술서등)</p> <p>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p>	

<p>전항과 같다.</p>	
<p>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u>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u></p>	<p>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u>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u></p>
<p>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u>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u> 2. <u>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u> 3. <u>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u></p>	<p>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u>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 -----  2~3호는 종전과 동일</p>
<p>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 <u>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u>  ② <u>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u></p>	<p>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u>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u>  ② <u>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u></p>

<p>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u>행하여진</u>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u>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u></p>
<p>제317조 (진술의 임의성)</p> <p>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p> <p>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p> <p>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p> <p>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p> <p>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u></p>
<p>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3절 공판의 재판</u></p> <p><u>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u>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p>
<p>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p>	

## 제320조 (토지관할위반)

-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

<p>야 한다.</p> <p>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확정판결이 있을 때</li> <li>2. 사면이 있을 때</li> <li>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li> <li>4. 범죄후의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li> </ol> <p>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li> <li>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li> <li>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li> <li>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li> <li>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li> <li>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li> </ol> <p>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p> <p>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li> <li>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li> <li>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li> <li>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li> </ol>	
---	--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제332조 (물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물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

<p>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p> <p>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p> <p>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p> <p>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p> <p>①刑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刑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p> <p>①형법----- ----- ----- ----- 형법----- ----- ----- -----.</p>

<p>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①刑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p> <p>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p> <p>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p> <p>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5.3.31&gt;(※2008.1.1.부터 시행)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p>	<p>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                  -----                  -----.</p>

<p>제342조 (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p> <p>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p> <p>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lt;개정 1963.12.13&gt;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p>	
--	--

<p>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u>하여야 한다</u>.          ②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p>	<p>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u>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p>
<p>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p> <p>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p>	



<p>소를 취할 수 있다.</p> <p>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p> <p>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lt;개정 1963.12.13&gt;)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p>	
---	--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개정 1963.12.13>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p>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p> <p>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lt;신설 1963.12.13&gt;</p> <p>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lt;개정 1963.12.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li> <li>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li> <li>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li> <li>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li> <li>5. 삭제 &lt;1963.12.13&gt;</li> <li>6. 삭제 &lt;1963.12.13&gt;</li> <li>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li> <li>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li> </ol>	
---	--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 ①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 ①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p>있다.&lt;신설 1963.12.13&gt;</p> <p>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lt;개정 1963.12.13&gt;</p> <p>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65조 (피고인의 출정)</p> <p>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p> <p>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lt;개정</p>	
---	--

<p>1963.12.13&gt;</p> <p>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lt;개정 1963.12.13&gt;</p> <p>제370조 (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lt;개정 1963.12.13&gt;</p> <p>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lt;개정 1963.12.13&gt;</p> <p>제372조 (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lt;개정 1961.9.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li> <li>2. 원심판결이 있는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li> </ol> <p>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	--

<p>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p> <p>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p> <p>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p> <p>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p> <p>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	--

-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9.1>

제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



<p>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p> <p>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lt;개정 1961.9.1, 1963.12.13&gt;</p> <p>제385조 삭제 &lt;1961.9.1&gt;</p> <p>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p> <p>제387조 (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p> <p>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p> <p>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p>	<p>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6조 (파기자판)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lt;개정 1961.9.1&gt;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p>	

<p>용한다.</p> <p>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lt;개정 1961.9.1&gt;</p> <p>제399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p> <p>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p> <p>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lt;개정 1961.9.1&gt;</p> <p>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01조 (정정의 판결)</p> <p>①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p> <p>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p> <p>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p>	

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p>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p> <p>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	--

<p>제416조 (준항고)</p> <p>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li> <li>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li> <li>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li> <li>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li> </ol> <p>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7조(동전)</p>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7조(동전)</p>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19조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lt;개정 1995.12.29&gt;</p>	

<p>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li> <li>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li> <li>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li> <li>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li> <li>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li> <li>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li> <li>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li> </ol> <p>제421조 (동전)</p> <p>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p>	
---	--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p>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p> <p>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p> <p>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p> <p>제431조 (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p>	
--	--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 (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p>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38조 (재심의 심판)</p> <p>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li> <li>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li> </ol> <p>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p> <p>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p>	
---	--

<p>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p> <p>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p> <p>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p> <p>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p> <p>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p> <p>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p> <p>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p> <p>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p> <p>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p>	
---	--

<p>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p> <p>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p> <p>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p>	
---	--

할 수 있다.

제455조 (기각의 결정)

-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8조 (준용규정<개정 1995.12.29>)

-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2.29>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p>제460조 (집행지휘)</p> <p>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p> <p>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p> <p>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p> <p>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p> <p>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p> <p>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p>	
--	--

<p>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p> <p>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p> <p>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p>	



<p>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p> <p>&lt;개정 1963.12.13&gt;</p>	
<p>제471조(동전)</p> <p>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li> <li>2. 연령 70세 이상인 때</li> <li>3. 잉태후 6월 이상인 때</li> <li>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li> <li>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li> <li>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li> <li>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li> </ol> <p>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u>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u>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471조(동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u>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u>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p>	



<p>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民事執行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2.1.26&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민사집행법</u>                  -----                  -----.</p> <p>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p>	

<p>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lt;신설 2004.10.16&gt;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④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p>	<p>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현행과 같음)          2. <u>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u>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u>            ④ <u>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p>	

<p>부하여야 한다.                  ② 물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의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의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① ~ ② (생략)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① ~ ② (생략)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p>	

<p>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p> <p>제491조 (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民事執行法の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6&gt;</p>	<p>제493조(집행비용의부담)-----                  -----                  -----民事집행법-----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조(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p>

	<p>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p> <p>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p> <p>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p> <p>제6조(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 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第260條(裁定申請) 第2項·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第262條(高等法院의 裁定決定)·第263條(公訴提起의 擬制)·第264條(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를 “제260조제2항 내지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제264조의2”로 한다.</p> <p>③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3항 단서 중 “刑事訴訟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p> <p>④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p>
--	---



---

2007년 6월 일 인쇄  
2007년 6월 일 발행

發行  
印刷 D & P  
(02) 2269-1302

非賣品

---

